

제정 해군규정 제 228호(1980. 8. 1.)
일부개정 해군규정 제2393호(2019. 7. 15.)

해군 특수업무 규정

(전·평시용)

목 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4
제2조(정의)	4
제3조(적용범위)	5
제4조(개인 건강기록부의 작성 유지)	5

제 2 장 잠수의학

제 1 절 일반업무

제5조(잠수의학 관리업무)	6
제6조(잠수 군의관 임무)	6
제7조(잠수업무 보고)	7
제8조(수중사고 의무조사 및 보고)	8

제 2 절 신체검사 및 작성검사

제9조(수중근무자 신체검사)	9
제10조(신체검사 결과 등의 조치)	11
제11조(수중근무자 신체적 적성자문)	11

제12조(수중근무 의무인가서)	12
제13조(의학적 이유로 인한 수중근무 정지부과 및 해제)	13
제13조의 2(의학적 이유로 인한 수중근무 해임)	14
제13조의 3(신체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	15
제13조의 4(수중근무 적성 심의위원회)	15
제14조(이압성 골괴사 유소견자 관리)	16
제15조(수중근무자 신체검사 항목 및 적격 판정기준)	16

제 3 장 항공의학

제 1 절 일반업무

제16조(관계관의 임무 및 책임)	24
제17조(항공기 사고 의학적 조사 및 보고)	25

제 2 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제18조(공중근무자 신체검사)	26
제19조(신체검사 결과 등의 조치)	28
제20조(공중근무자 비행적성자문)	29
제21조(의학적 문제가 발생한 공중근무자의 처리)	29
제22조(의학적 사유로 인한 공중근무 해임 및 비행적성 재분류)	30
제23조(비행임무관찰(웨이버) 부과 및 관리)	30
제24조(공중근무자 항공생리 교육훈련)	31
제25조(항공군의관의 운영)	31

제 4 장 <삭제>

제25조<삭제>	32
----------------	----

제 5 장 해양의학 연구 및 포상

제27조(해양의학 연구업무)	32
제 6 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33
부 칙	33
별표 및 별지 목차	37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근무자의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특수근무자의 건강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근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수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수중근무자

- 1) 심해잠수사, 특전, 특수 정보 잠수요원
- 2) 해병대 수색요원
- 3) 잠수군의관·잠수의무요원
- 4) 잠수함 및 유사함정 승조 자격 유지자
- 5) 잠수군무원
- 6) 수중건설요원
- 7) 잠수자격 소지자로서 그 밖의 부대에서 특전 및 잠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조종사, 비행전술장교, 비행군의관, 조작사, 항공사수, 구조사, 공중근무자격 획득을 위한 피교육자 등 해군 항공 규정 제1장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중근무자

다. 그 밖에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잠수군의관”이란 군의장교로서 해양의학지원소에서 잠수군의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항공군의원”이란 군의장교로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항공군의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수중(공중)근무 정지 부과”란 수중(공중)근무자격을 보유하되, 부과된 기간 동안 수중(공중)근무에 한한 종사를 정지함을 말한다.
5. “수중(공중)근무 정지 해제”란 부과된 근무 정지 상태에서 수중(공중)근무를 할 수 있게 복귀시킴을 말한다.
6. “수중(공중)근무해임”이란 인가되었던 수중(공중) 근무자격을 취소함을 말한다.
7. “신체적 적성자문”이란 잠수(항공) 군의원 및 해당 부대(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의학적 측면에서 수중(공중) 근무 계속 여부에 대한 신체 및 정신적 적합성 여부를 조사, 판단함을 말한다.
8. “특수의학 연구”란 각급 부대에서 제기되는 특수근무자의 의학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문헌조사, 역학조사, 동물실험 또는 실제 해양시험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1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군·해병대 전 부대(서)에 적용한다.

제4조(개인 건강기록부의 작성 유지)

- ① 특수근무자가 소속된 부대(서)장은 특수근무자 건강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기록, 서류의 관리 및 이관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하여 개인 건강기록부를 작성, 유지한다.
- ② 소속부대(서)장은 특수근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반드시 개인 건강기록부에 총괄하여 보관하고, 타 부대(서)로 진출시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며, 전역 시에는 해양의료원(해양의학지원소)으로 이관한다.

1. 수중(공중)근무자 개인 의무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2. 수중(공중)근무자 신체 명세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3. 개인 잠수기록(별지 제10호서식)

제 2 장 잠수의학

제1절 일반업무

제5조(잠수의학 관리업무)

이 규정에 명시된 수중근무자의 의학적 관리업무 수행의 책임은 해당 부대(서)장에게 있다.

제6조(잠수 군의관의 임무)

잠수군의관은 수중근무자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중근무자의 신체검사
2. 수중근무자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적성유지
3. 잠수시의 제반 의학적 사항 지원
4. 잠수에 수반되는 특수 질병, 손상의 예방, 진단 및 치료
5. 각종 잠수장비와 인체 간에 관련된 의학적 업무
6. 수중작전 및 잠수에 따른 긴장요인과 관련된 수중근무자의 보호
7. 수중근무자에 대한 잠수의학 및 보건교육
8. 수중근무자에 대한 의학적 조언
9.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따른 잠수 시 입회
 - 가. 39.6미터(130피트) 이상 수심의 개방식 스쿠버 잠수
 - 나. 혼합기체를 사용하는 폐쇄식 스쿠버 잠수
 - 다. 수상기체 공급식 압축공기 잠수(SSDS) 중 57.9미터(190피트) 이상 수

심의 잠수

라. 수상기체 공급식 압축공기 잠수 중 예외 잠수

마. 「해군 잠수 규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잠수

바. 그 밖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잠수군의관이 판단한 잠수

10. 잠수함 및 유사함정과 관련된 의학적 업무

제7조(잠수의무 보고)

① 수중근무자를 운용하는 부대(서)장은 잠수의무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반기 말 다음달 15일까지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잠수의무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조사하여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각종 표를 이용할 수 있다.

1. 수중근무자의 정신적, 신체적 사항 : 신체적 적성, 사기, 스트레스 및 피로의 원인이 되는 인적요소 환자후송, 수중근무자의 진료 등에 관한문제를 기술

2. 잠수안전 : 잠수안전에 관련된 업무 및 회의성과, 잠수사고, 수중근무자 부상시의 구호 및 처치에 관하여 기술

3. 교육훈련 및 연구 : 수중근무자의 구급법 교육훈련, 잠수생리, 교육훈련, 잠수 의학적 문제 및 연구실적에 관하여 기술

4. 수중근무자 병력

가. 월별, 부대별 수중근무자 평균 병력

나. 수중근무자 유힬 병력(보고 월까지 월별 유힬율을 표로 표시)

다. 입원 또는 근무면제자(잠수휴, 단기·장기 수중근무 정지자)의 명단만, 진단명 및 일자 등 관련사항

5. 수중근무자 개인 의무기록카드 이동 및 기록변경 사항

6. 해당 부대(서)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황 및 문제점
<개정 2019. 7.15.>

제8조(수중사고 의무조사 및 보고)

① 잠수군의관은 가능한 모든 조사를 실시하여 수중사고 원인 규명(부검 포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잠수군의관이 운영되지 않는 해당부대(서)의 경우에는 해양의료원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중사고 의무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담당 잠수군의관은 수중사고 개요 및 수중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예상되는 수중근무자의 생활환경 및 과거 병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할 것

2. 각종 독성물질 또는 약물이 수중사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것

3.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잠수군의관은 부검을 의뢰할 것

③ 수중사고 의무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1. 사고조사 책임부대(서)장(또는 사고조사 위원장) 및 해당 부대 의무부대(서)장은 잠수군의관이 작성한 수중사고 의무 보고서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즉시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보고

2. 수중사고 의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고와 관련된 개인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2) 총 잠수시간 및 최근 30일간의 잠수시간 및 잠수내용(개인 잠수 기록 : 별지 제10호서식)

3) 수중근무자 개인 의무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사본

4) 개인 건강기록

- 5) 사고 전 최근에 실시한 수중근무자 특수 신체검사표(별지 제6호 서식) 사본 또는 신체검사 보고서 사본
 - 6) 사고 전 24시간 동안의 행동 및 경위와 그 밖의 관련사항
 - 7) 사고 전 1주일 동안의 군내·외 진료, 투약기록 및 관련사항
- 나. 사고개요 및 현장의 의학적 관련사항
- 다. 사고자의 현재 상태 및 진찰소견(사망사고 시 사체검안 소견)
- 라. 개인 잠수관련 장구 조사 의견
- 마. 분석 및 의견
- 바. 부검을 시행한 경우, 부검 시 촬영한 사진, 병리조직학적 소견 및 부검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2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제9조(수중근무자 신체검사)

- ① 신체검사는 수중근무자 특수신체검사표(별지 제6호서식)를 이용하고 제3항 및 제15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 ②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 정례 및 수시 신체검사로 구분한다.
 1. 선발 신체검사 : 모든 수중근무 지원자는 해양의료원에서 수중근무 적성검사를 포함한 선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련부위 방사선 검사를 수검
 2. 정례 신체검사 : 수중근무자 중 병은 전역 전에 하사이상 간부는 매년 1회 해군 군병원에서 수중근무자 특수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연례신체 검사 대상에서 제외
 3. 수시 신체검사 : 수중근무자를 운용하는 부대(서)장은 필요에 따라 참모총장(의무실장) 또는 해양의료원장(해양의학지원소장)에게 필요한 항목

에 대하여 수시 신체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방법은 정례 신체검사에 준하여 실시

③ 신체검사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불합격 조치

가. 만성 폐질환(결핵, 천식 등)

나. 급성 폐질환(기흉, 혈흉 등)

다. 만성 재발성 부비동염, 중이염, 외이도염

라. 만성 재발성 운동계 질환(습관성 탈구 등)

마. 만성 재발성 위장관계 질환(위염, 궤양, 담석 등)

바. 약물중독(만성 알콜중독, 수면제 남용 등)

사. 치료되지 않은 매독

아. 심근경색, 염증성 심질환, 발작성 빈맥, 심방조동, 심방세동

자. 교원성 질환

차. 뇌손상(뇌진탕, 뇌수술)

카. 정신적인 비정상, 인격이상, 정신장애, 중추신경계 질환 등

타. 기립성 순환장애, 실신 등

2. 세부적인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은 제15조의 신체검사 항목 및 적격 판정기준을 적용

④ 좌우 견관절, 고관절 및 슬관절의 방사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수중근무자 선발 시(다만, 잠수함 근무자는 필요시만 검사)

2. 수중근무자 전역 시(다만, 잠수함 근무자는 필요시만 검사)

3. 유소견자 추적 검사 시(6개월)

4. 정례 신체검사 중 3년 주기의 정기 골관절 방사선 검사를 실시할 것.

다만, 유소견자의 경우 진료를 실시한다.

5. 포화잠수 실시 전, 후

6. 그 밖에 잠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잠수 적성검사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심 60fws(18msw)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10분간 노출될 때 압력평형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기도 감염, 비염, 급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에는 압력 내성검사를 연기하여 치료된 후 다시 검사가능

2. 적성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

3. 잠수함 및 유사함정 승조원은 선발 및 정례신체검사 시 압력 내성 검사 미실시

⑥ 잠수함 승조원은 잠수함 비상탈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만 35세 이상인 사람의 최초 비상 탈출훈련은 제한하며, 기체 팽창 시 허파에 폐쇄성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탈출훈련은 금한다.

제10조(신체검사 결과 등의 조치)

① 선발신체검사 후 수중근무자 교육훈련부대(서)장은 해양의료원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 합격자 및 불합격자를 구분하여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보고하고,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② 정례신체검사 후 수중근무자 운용부대(서)장은 해양의료원장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 합격자, 불합격자 및 미수검자를 구분, 불합격자의 경우 제13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조치 결과 및 미수검자 명단을 합철하여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보고하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13조의3에 따라 조치한다.

③ 수시신체검사 후 제10조제2항의 정례 신체검사 결과 조치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수중근무자 신체적 적성자문)

① 수중근무자 운용부대의 부대(서)장은 수중근무자에게서 수중근무에 부

적당할 것으로 우려할 만한 신체적 조건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자대의 능력으로 규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적성자문을 의뢰하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양의료원장에게 정밀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자문의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중(공중)근무자 개인 의무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사본 1부
2. 적성자문 의뢰서(별지 제4호서식) 1부
3. 수중근무자 특수 신체검사표(별지 제6호서식) 1부

③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적성자문 결과를 검토하여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조치한다.

제 12조(수중근무 의무인가서)

① 수중근무 의무인가 대상자는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② 수중근무 의무인가서 발급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중근무자 선발 시
2. 무기 수중근무정지 해제 시

③ 수중근무 의무인가서(별지 제3호서식) 발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의료원장은 수중근무 의무인가서를 선발 합격자 1인당 2부씩 작성하여 잠수군의관란에 서명, 날인하여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발급 의뢰하고,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의무인가서를 발행, 해양의료원장에게 송부하고 해양의료원장은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 후 1부는 보관, 1부를 선발합격자에게 교부하고, 명단을 해당 부대(서)장에게 통보

2. 무기 수중근무정지 해제의 경우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해제되어 인사명령으로 확인된 경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해양의료원장에게 수중근무 의무인가서 작성을 지시하고 해양의료원장은 대상자 1인당 2부씩 작성하여 잠수군의관란에 서명, 날인하여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발급 의뢰, 참

모총장(의무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의무인가서 발행 후 해양의료원장에게 송부하고 해양의료원장은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1부는 보관, 1부를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대(서)장에게 통보

제13조(의학적 이유로 인한 수중근무 정지 및 정지해제)

① 수중근무자 운용부대의 부대(서)장(잠수군의관)은 수중근무자의 수중근무 적성 여부를 항상 세밀히 관찰하여 수중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수중근무 정지로부터 이를 해제함이 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의학적 이유로 인한 수중근무 정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4종으로 구분한다.

1. 잠수휴 :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경증의 질환 또는 손상으로 외래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및 그 밖에 잠수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7일 미만의 수중근무를 정지

2. 단기 수중근무 정지 : 7일 이상 30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잠수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7일 이상 30일 미만의 수중근무를 정지

3. 장기 수중근무 정지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잠수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수중근무를 정지

4. 무기 수중근무 정지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잠수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6개월 이상의 수중근무를 정지

③ 의학적 이유로 인한 수중근무 정지 부과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잠수휴 또는 단기 수중근무 정지 부과 : 수중근무자 운용부대장(잠수군의관)은 잠수휴 또는 단기 수중근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수중근무자에 대해 수중근무 정지 부과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해양의료원장에게 심의를 의뢰하고 해양의료원장은 제13조의4에 따라 해양의료

원 심의위원회 개최 후 심의결과를 해당 부대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부대장은 그 결과에 따라 인사명령으로 잠수휴 또는 단기 수중근무 정지를 부과

2. 장기 및 무기 수중근무 정지 부과 : 수중근무자 운용부대장(잠수군의관)은 장기 또는 무기 수중근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수중근무자에 대해 수중근무 정지 부과 심의 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해군본부 의무실에 심의를 의뢰하고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제13조의4에 따라 해군본부 심의위원회 개최 후 심의결과를 해당 부대장에게 시달하며 해당 부대장은 그 결과에 따라 인사명령으로 장기 또는 무기 수중근무 정지를 부과

④ 수중근무 정지 해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잠수휴 또는 단기 수중근무 정지 해제 : 수중근무자 운용부대장(잠수군의관)은 잠수휴 또는 단기 수중근무 정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수중근무자에 대해 수중근무 정지 해제 심의 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해양의료원장에게 심의를 의뢰하고 해양의료원장은 제13조의4에 따라 해양의료원 심의위원회 개최 후 심의결과를 해당 부대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부대장은 그 결과에 따라 인사명령으로 잠수휴 또는 단기 수중근무 정지를 해제

2. (삭제)

3. 장기 또는 무기 수중근무 정지 해제 : 수중근무자 운용부대장(잠수군의관)은 장기 또는 무기 수중근무 정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수중근무자에 대해 수중근무 정지 해제 심의 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해군본부 의무실에 심의를 의뢰하고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제13조의4에 따라 해군본부 심의위원회 개최 후 심의결과를 해당 부대장에게 시달하며 해당 부대장은 그 결과에 따라 인사명령으로 장기 또는 무기 수중근무 정지를 해제

제 13조의2(의학적 이유로 인한 수중근무 해임)

① 인가되었던 수중근무 자격을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것으로 연속 2회 이상의 장기 수중근무 정지 또는 무기 수중근무 정지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중근무 정지 부과의 요건이 되었던 의학적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의학적 이유로 인한 수중근무 해임의 절차는 제13조제3항제2호 장기 또는 무기 수중근무 정지 부과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 13조의3(신체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

연례 신체검사 또는 수시 신체검사 수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지정한 장소에서의 해당 신체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경우, 해군본부 의무실장은 제10조에 따라 수중근무자 운용부대(서)장이 확인, 작성하여 보고한 미수검자에 대해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통보하고 무기 수중근무 정지 인사명령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정지 해제는 차 년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제13조제4항제3호 장기 또는 무기 수중근무 정지 해제 절차를 준용한다.

제 13조의4(수중근무 적성 심의위원회)

수중근무 적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1. 해양의료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해양의료원장

나. 위원 : 심의대상자 소속부대의 군의관과 인사 담당자를 포함한 위원장이 임명한 5인

다. 간사 : 해양의료원 해양의학지원소장

2. 해군본부 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 의무실장

나. 위원 : 심의대상자 소속부대의 군의관과 인사 담당자를 포함한 위원장이 임명한 5인

다. 간사 : 해군본부 의무실 보건정책과 특수의학담당

3. 운영

가.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

나. 위원회 의결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 간 의사 불일치 등 만장일치가 불가능한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해당부대장은 심의결과에 대해 7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위원장은 재심의를 개최. 다만, 재심이는 1회에 한함.

제 14조(이압성 골괴사 유소견자 관리)

① 골관절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 이압성 골괴사 유소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중근무 계속 : 자각증상이 없고 병소부위가 정지된 유소견자
2. 수중근무 제한 : 자각증상이 있고 병소부위가 정지된 사람과 자각증상이 없고 병소부위가 진행성인 유소견자
- 3 수중근무 정지 : 자각증상이 있고 병소부위가 진행성인 중증 유소견자

② 이압성 골괴사 유소견자에 대한 수중근무 계속, 제한 및 정지의 판정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해양의료원장이 하며, 정지부과 및 해제의 절차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 15조(수중근무자 신체검사 항목 및 적격 판정기준)

① 선발 신체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

가. 적정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

나. 만 30세 이상자는 경우에 따라 허용 가능

2. 체격

가. 체중이 신장과 균형을 이룬 사람. 만 30세 초과자에서 중등도의 비만이 있는 경우 다른 수중근무에 관련되는 신체검사 사항이 적격이면 잠수함 및 유사함정 근무 허용 가능

나. 신장 : 160cm ~ 190cm

다. 비만하지 않고 건강한 체격. 다만, 순환기계 기능이 완전할 경우 경도의 비만(표준체중의 5kg 정도 추가)은 허용

3. 운동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적격 처리

- 1) 현재 치료 중인 골절이나 치료 후 장애가 동반된 경우
- 2) 지속적인 관절변화를 일으키는 손상
- 3) 골 및 관절의 만곡, 퇴행성 변화, 급만성염증, 종양 등
- 4) 관절근접부위 뼈의 변화가 분명한 경우
- 5) 교원성 질환

나. 변형 및 질환으로 인하여 정형외과적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은 특별검사 실시

4. 순환기계

가. 검사 항목

- 1) 심전도 검사
- 2) 만 40세 초과자는 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동부하 검사 실시 가능

나. 부적격인 경우

- 1) 심근, 관상동맥, 심내막, 심장판막, 심낭, 대혈관의 질환
- 2) 기질적인 고/저 긴장성 이상 조절
- 3) 고혈압(안정 시에 수축기 혈압이 150mmHg(만 25세 미만) 또는 160mmHg(만 25세 이상), 확장기 혈압이 100mmHg를 초과하는 경우)
- 4) 부정맥, 심실기의 수축, 심실조기홍분증후군

5) 한·냉에 과민성 체질인 사람

다. 일시적 부적격인 경우

- 1) 현저한 정맥류
- 2) 말초순환계 장애

5. 호흡기계

가. 검사 항목

- 1) 흉부 방사선 촬영
- 2) 폐기능 검사

나. 방사선과 검사에서 폐, 늑막, 종격동에 급만성 질환이 없는자로 폐 질환이 있었던 경우 후유증의 유무를 상세히 조사하고, 기능이 저하된 경우 부적격 판정을 하며 호흡장애 및 폐 내에 과도한 공기축적을 유발시키는 질환이 있는 경우 압력 내성검사에서 제외시키고 부적격 판정. 이 경우 특히 결핵 등의 이유로 폐에 석회화 등의 흔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잠수함 비상탈출 훈련은 금지

다. 부적격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현저하게 폐 운동을 억제하는 늑막비후와 말초 석회침착
- 2) 최근 2년 이내 자연기흉이 발생한 병력이 있는 사람
- 3) 폐기종
- 4) 기관지 확장증
- 5) 폐기능 저하를 동반한 폐질환 후유증
- 6) 폐기능 장애가 있는 흉부의 변형
- 7) 만 12세 이후 천식이 발생한 병력이 있는 사람

6. 소화기계

가. 기능적 및 기질적인 이상 유무를 조사

나. 부적격인 경우

- 1) 위장관계 천공 출혈의 병력

- 2) 탈장 및 동통을 동반한 항문질환
- 3) 만성 소화불량, 장관염 등과 같이 잠수함 내 생활과 식사가 기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
- 4) 그 밖의 소화기계의 만성적인 질환
- 5)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항원 보유자(B형, C형 등)

7. 비뇨 생식기계

가. 선발신검 시 검사 항목

- 1) 소변검사(mid-stream urine을 채취)
- 2) 매독 혈청반응검사
- 3) 단백뇨

나. 성병이 있는 경우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잠수함근무에서 제외
다. 부적격인 경우

- 1) 신장결석
- 2) 비뇨 생식기계의 급성 질환
- 3) 만성 전립선질환
- 4) 기질적인 성병(신경 매독, 골매독, 내장매독)

8. 내분비계

가. 인체대사나 영양상태의 이상, 내분비선의 기능 장애들이 있는 경우
부적격 판정

나. 부적격인 경우

- 1) 작업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저해하는 내분비계장애 및 질환자
- 2) 당뇨병

9. 혈액 및 조혈계

가.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의 혈액검사를 실시

- 1) 혈색소(Hb) 및 적혈구당 평균혈색소 농도(MCHC)
- 2) 적혈구수, 백혈구수

- 3) 백혈구 백분율(differential blood count)
- 4) 적혈구 침강속도(ESR)
- 5) albumin
- 6) 혈중 지방함량
- 7) transaminase(SGOT, SGPT)
- 8) 혈당량
- 9) 혈중 요산량

나. 모든 형태의 국소 혹은 전신적인 임파계 질환의 경우 부적격 판정

10. 피부 : 다음 각 목과 같은 이상을 보이는 경우 부적격 처리

가. 감염성이 있거나, 행동장애를 주거나 또는 혐오감을 주는 급·만성 피부질환

나. 광범위한 동상

다. 심한 몸 냄새

11. 신경계

가.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의 신경학적 및 정신과적 검사 실시

- 1) 가족 및 개인의 병력 평가
- 2) 두개골의 상태(상처 또는 수술흔적)
- 3) 뇌신경기능 검사
- 4) 운동능력 검사
- 5) 온도감각 검사
- 6) 고유감각 반사 검사
- 7) 조화운동 검사
- 8) 언어, 행동, 발성검사
- 9) 뇌하수체 기능 검사

나. 다음과 같은 중추 및 말초신경계의 선천적 및 후천적인 만성질환은 부적격 판정

- 1) 뇌염, 간질, 근육질환의 병력
- 2) 마비, 감각 이상, 소아마비, 뇌막염, 심한 뇌손상
- 3) 알콜중독

12. 정신과적인 문제 : 다음 각 목과 같은 성격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 부적격판정

- 가. 정신병, 정신병적 신경증적 결합
- 나. 폐쇄공포증
- 다. 정서적인 미성숙
- 라. 불안
- 마. 반사회적인 성격
- 바. 불건전한 동기가 있는 경우
- 사. 지능이 낮은 경우
- 아. 적응력의 결핍
- 자. 이해와 반응속도가 느린 경우

13. 시력

가. 다음의 검사를 실시. 갑작스런 시력감소나 안과 질환이 의심될 때 안과전문의의 검사 필요

- 1) 시력표에 따른 시력검사 및 굴절률 검사
- 2) 색맹검사 : pseudoisochromatic plate 사용
- 3) 양안시 검사
- 4) 눈의 전반부 slit lamp 검사, 안저검사, 동공반사
- 5) 동안근 검사
- 6) 시야 및 맹점검사
- 7) 암순응검사

나. 교정시력 0.8이상 또는 나안 시력 0.3이상. 다만, 특전요원 및 폭발물 처리요원, 해병수색대 요원은 나안 시력이 0.5 이상, 잠수함 승조원

의 경우 교정시력만 평가.

다. Pseudoisochromatic Plate를 사용하여 색약·색맹 검사를 실시. 다만, 유소견자의 경우 안과 진료를 통해 색약·색맹 여부를 판정 후 색맹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14. 이비인후과

가. 다음의 검사를 실시

- 1) 이경검사 : 외이도와 고막검사, 유스타키안관의 통기성 검사
- 2) 전정기관검사

나. 외이도, 고막, 중이, 내이의 급성질환은 일시적 부적격 판정

다. 부적격인 경우

- 1) 내이와 중이의 만성질환 : 중이염, 이경화증
- 2) 인공기관 삽입술을 받은 경우
- 3) 전문의의 진단에 따른 만성 편도선염
- 4) 만성 부비동염, 비후성 혹은 위축성 비염, 건초염
- 5) 습관성 비출혈
- 6) 언어장애를 동반한 구개염
- 7) 후두염, 후두의 만성적인 질환, 양측 음성마비, 만성적인 쉼소리
- 8) 평형장애

15. 청력 : 청력계 및 청력검사표(별지 제9호서식)를 이용하여 측정된 청력손실 정도의 부적격 판정은 「해군 건강관리 규정」의 해당 관련조항에 따라 판정

16. 치아, 구강, 악골

가. 치과 의사가 검사하며 치과 의사가 없을 시 군의관이 실시

나. 검사내용 : 충치와 이상 유무, 치아의 생명력, 구강위생 저작기능, 의치 교합검사 등

다. 치주질환, 광범위한 충치결손, 증상이 심한 치아질환 등은 일시적

부적격 판정

② 정례 신체검사는 선발 신체검사 기준과 동일하며, 각 항목별 차이점만 기술한다.

1. 연령 : 만 44세 이상인 경우 모든 의학적인 사실과 군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양의료원장이 적격판정

2. 체격 : 지난번의 신체검사 이후 체중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일정기간 관찰하여 적격 판정. 순환기계에 지장이 없는 중등도의 비만은 적격성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다음 검사 시까지 체중을 감소시킬 의무를 부여.

3. 순환기계 : 만 39세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운동부하 검사를 매 신체검사마다 실시

4. 소화기 : 군복무가 가능한 정도의 위장관 부분 절제수술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년 후에 잠수함내의 생활과 식사를 무리 없이 극복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 간이나 담관의 질환에 의해서 장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담석이 있는 경우 부적격 판정. 바이러스성 간염의 판정은 「해군 건강관리 규정」을 따른다.

5. 시력 : 노안에 따른 시력의 감소는 적격성 판정에서 무시되나, 양안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고려의 대상이 됨.

6. 청력

가. 청력계 및 청력검사표(별지 제9호서식)를 이용하여 측정된 청력 손실 정도의 부적격 판정은 「해군 건강관리 규정」의 해당 관련조항에 따라 판정

나. 최기 측정한 측정치의 난청정도 보다 유의성 있게 악화되는 진행성 인자는 부적격 판정

③ 수시 신체검사는 정례 신체검사 기준과 동일하며, 필요에 따라 일부항목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포화잠수 실시 전, 후 신체검사에서는 잠수군

의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15.>

제 3 장 항공의학

제1절 일반업무

제16조(관계관의 임무 및 책임)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한 관계관의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모총장(의무실장)

가. 공중근무자의 의학적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휘 감독하고 항공 의무정책을 수립

나. 항공의학적 비행적성관리에 관하여 지휘 감독

다.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

2. 해군본부 감찰실장 및 제6항공전단장(표준화평가실장) : 의학적 사유로 공중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

3. 공중근무자 운용부대(서)장

가. 공중근무자의 모든 의무 관련업무 수행의 책임

나. 항공군의관의 조언을 고려하여 항공의무 관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수립

4. 제66기지전대장(의무대장)

가. 공중근무자의 신체검사 결과를 통합 및 관리

나. 공중근무자들의 비행적성을 평가

5. 항공군의관 운용부대 의무대(실)장: 해당부대 및 해당지역 공중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

6. 항공군의관: 해당부대 및 해당지역 공중근무자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

- 가.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의 최종 판정
- 나. 공중근무자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적성 유지
- 다. 비행안전의 의학적 문제 연구
- 라. 비행에 수반되는 특수한 질병, 손상의 예방, 진단 및 치료
- 마. 항공기 및 각종 장비와 인체 간에 관련된 항공 의학적 업무
- 바. 공중작전 및 비행에 따른 긴장요인으로부터 공중근무자를 보호
- 사. 공중근무자의 항공생리 및 보건교육
- 아. 공중근무자에 대한 의학적 조언
- 자. 그 밖의 항공 의학적 업무를 수행

제 17조(항공기 사고 의학적 조사 및 보고)

① 항공군의관은 해당부대 및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의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공중사고 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항공 군의관이 운영되지 않는 해당 부대(서)의 경우에는 부대(서)장이 즉시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의뢰하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필요 시 제6항공전단장(의무대장)에게 조사를 지시한다.

②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항공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담당 항공군의관은 항공기 사고 개요 및 항공기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예상되는 공중근무자의 생활환경 및 과거 병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
2. 사고현장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보존함과 동시에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 추후 항공 의학적 연구가 되도록 하며, 항공기 잔해와 사체간의 거리 및 사체의 위치 등에 관한 정확한 기록
3. 사체 형태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각 부분이 분리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집 가능한 모든 신체조직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노

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병리검사

4. 각종 독성물질 또는 약물이 비행사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검사 실시

5.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항공 군의관은 부검 의뢰 가능

③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조사 책임부대(서)장(또는 사고조사 위원장)은 항공군의관이 작성한 항공기 사고 의무보고서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즉시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보고

2. 항공기 사고 의무보고서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고에 관련된 개인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2) 총 비행시간 및 최근 30일 비행시간, 내용

3) 공중근무자 개인 의무기록카드(별지 제1호 「해군 건강관리 규정」) 사본

4) 개인 건강기록

5) 최근 실시한 신체검사 보고서 사본

6) 사고 전 24시간 동안의 행동 및 경위와 그 밖의 관련사항

7) 사고 전 3개월 동안의 군내·외의 진료, 투약기록 및 관련사항

나. 사고개요 및 현장의 의학적 관련사항

다. 사고자의 현재 상태 및 진찰소견(사망사고 시 사체검안 소견)

라. 개인 비행 관련 장구 조사 의견

마. 분석 및 의견

바. 부검을 시행한 경우, 부검 시 촬영한 사진, 병리조직학적 소견 및 부검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2절 신체검사 및 적성 검사

제18조(공중근무자 신체검사)

①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는 다음의 주요항목을 포함한 정밀검사로 시행하며 신체검사서의 양식은 공중근무자 특수 신체검사표(별지 제8호서식)를 이용한다. 다만, 병원 자체의 신체검사서 양식이 있을 경우 이는 공중근무자 특수 신체검사표를 대신할 수 있다.

검사종목	검사내용	검사종목	검사내용
일반체격	신장, 체중	외과	이학적검사
내과	혈압, 심전도 흉부 청진	이비인후과	이학적검사 순음청력검사
안과	시력측정, 안압검사, 시야검사(선발검사 및 만 30·40·50세 검사 시 시행)	치과	구강검사
		방사선과	흉부X-선 촬영
혈액 및 소변검사			
간기능 검사	AST/ALT 총단백/알부민 총빌리루빈	소변검사	비중, 단백, 당 백혈구, 적혈구
신장기능 검사	BUN/Cr	대사기능 검사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요산, 갑상선검사(TSH, 홀수년도)
전혈구 검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색소	바이러스간 염 검사	HBs Ag/Ab, anti-HCV
		매독검사	VDRL

②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 정례 및 수시 신체검사로 구분한다.

1. 공중근무자 선발 신체검사 : 공중근무자 선발 신체검사는 교육 입교 전에 의학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공중근무자 선발부대장이 선발 신체검사 대상자 명단을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의뢰하고, 참모총장(의무실장)은 공군 항공 우주의료원장에게 신체검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의무부대(서)를 지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

2. 공중근무자 정례 신체검사

가. 조종훈련자(공중근무자 I급), 조종사(공중근무자 II급)는 연 1회 공중근무자 정례 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일반 정례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

나. 조종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공중근무자(공중근무자 III급) 및 유지비행을 하는 공중근무자들은 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검진 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반 정례 신체검사로 대체

3. 공중근무자 수시 신체검사 : 공중근무자를 운용하는 부대(서)장은 필요에 따라 참모총장(의무실장) 또는 해당 의무부대(서)장에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수시 신체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방법은 정례신체검사에 준하여 실시

③ 신체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반 신체검사는 공중근무 등급별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조건, 별표1)을 적용 시행

2. 의학적 공중근무 등급

가. 공중근무 I 급 : 조종훈련자

나. 공중근무 II급 : 조종사

다. 공중근무 III급 : 항공기 조종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공중근무자

1) 전술 장교·전술 준사관, 조작사

2) 항공군의관·항공간호장교

3) 사수 및 각종 공중근무자

3.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기준)

가. 별표 1의 불합격 조건을 기준으로 판정

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조건)에 수록되지 않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중근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공중근무자 특수 신체검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 유지

제19조(신체검사 결과 등의 조치)

- 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발 신체검사 실시 의무부대로 지정 받은 의무부대장은 신체검사 실시 후 신체검사 합격자 및 불합격자를 구분,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부대(서) 및 참모총장(인사기획과장, 의무실장)에게 보고한다.
- ② 정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무부대는 신체검사 판정 후 결과를 제6항공전단 의무대로 통보한다. 다만, 항공군의관 미보직 부대는 관할 가장 가까운 지역 항공군의관 보직 의무부대 또는 제6항공전단 의무대로 제출한다. 민간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공중근무자들은 개인이 직접 관할 항공군의관 보직 의무부대에 제출한다. 항공군의관 보직 의무부대는 통보받은 정례신체검사 결과로 신체검사 판정 후 합격자, 불합격자, 미수검자를 구분하여 해당부대장에게 통보하고 결과를 제6항공전단 의무대로 통보한다. 제6항공전단 의무대장은 관할 의무부대로부터 통보받은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 반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 ③ 제19조제2항의 정례 신체검사 결과 조치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 7.15.>

제20조(공중근무자 비행적성자문)

- ① 공중근무자 운용부대의 부대(서)장은 공중근무자에게서 공중근무에 부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이 발견되었을 경우,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적성자문을 의뢰한다.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의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근무자 개인 의무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사본 2부
2. 적성자문 의뢰서(별지 제4호서식) 2부
3. 신체검사 보고서(입원 및 퇴원 경과보고서) 2부
4. 항공군의관 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2부

③ 공중근무자 운용부대의 부대(서)장은 적성자문 결과에 따라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21조(의학적 문제가 발생한 공중근무자의 처리)

① 공중근무자 운용부대(장)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항공군의관 의견서(별지 제5호서식)와 신체검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중근무 자격심사 위원회에 회부한다.

1.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2. 의학적인 이유로 인한 비행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② 임신 및 입원한 공중근무자는 「해군 안전 규정」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22조(의학적 사유로 인한 공중근무 해임 및 비행적성 재분류)

① 공중근무자격을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것은 적성 자문결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② 적성 자문결과에 따라 공중근무 신체등급 변경으로 비행적성이 재분류된 경우 공중근무 자격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종 및 자격을 전환할 수 있다.

③ 적성 자문결과 공중근무 신체등급이 변경되거나 비행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중근무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공중근무 자격심사 위원장은 적성 자문결과를 검토하여 처리 후 공중근무 자격심사 의결서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통보한다.

④ 의학적 사유로 인한 공중근무 해임 복귀의 절차는 이 규정 각 조항의 공중근무자 선발 절차를 준용한다.

제23조(비행임무관찰 부과 및 관리)

① “웨이버”란 비행적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항공군의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하에 비행임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웨이버 부과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웨이버는 비행적성자문을 통해서만 부과 및 해제 가능

2. 제6항공전단 의무대장은 비행적성 자문결과에 따라 웨이버 기한을 부과하고, 기한 만료 7일전까지 비행적성자문을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

③ 웨이버로 판정받은 공중근무자는 비행 전 반드시 항공군의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비행안전에 위협한 징후가 관찰되면 항공군의관은 비행대대장에게 보고하여 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제24조(공중근무자 항공생리 교육훈련)

① 조종사와 여압장치가 되어있는 항공기탑승 공중근무자는 최초 자격 부여 비행 교육과정 수료 전에 필수적으로 공군 항의원의 항공생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 조종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승무원 및 항공의학장교는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자격을 유지한다.

제25조(항공군의관의 운영)

① 전 지역을 다음의 9개 지구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1. 평택지구

2. 김포지구

3. 대전지구

4. 동해지구

5. 목포지구

6. 제주지구
7. 부산지구
8. 진해지구
9. 포항지구

② 항공군의관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항공군의관의 배치 운영부대 : 해당 지구 내 병원 및 의무대(실)
2. 항공군의관의 운용은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항공군의관의 수료증명서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인사참모부장(장교인사과장)에게 해당지역 책임항공군의관으로 보직 확인 인사명령을 의뢰

제 4 장 <삭제>

제26조<삭제>

제 5 장 해양의학 연구 및 포상

제27조(해양의학 연구업무)

- ① 참모총장(의무실장)은 해군과 관련된 특수의학 연구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천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
- ②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의무지원 담당부서 내에서 문제점으로 파악 보고되는 문제를 예의 관찰하여 해양의료원장에게 연구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해양 및 군진의학 발전에 공헌한 해양 분야의 우수 논문 선정 및 심사는 해양의학 연구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1. 해양의학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구성 : 해군본부 의무실장, 의무계획과장, 보건정책과장, 특수의학담당 및 보건환경담당
2. 심사대상 및 시기 : 해당분야 관련 특수의학 및 군진의학에 관한 논문으로 연 1회 1/4분기에 심사
- ④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해양의학 분야의 활발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과 같이 참모총장이 표창한다.
 1. 최우수 논문 : 1편
 2. 우수논문 : 2편
 3. 장려 논문 : 3편 이내

제 6 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해군 규정관리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라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5.>

부 칙 <1980. 12. 1.>

1. 시행일 : 이 규정은 1980.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9호, 1982. 1. 25.>

1. 시행일 : 이 규정은 1882. 1. 25.(개정 제69호)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6호, 1985. 12. 23.>

1. 시행일 : 이 규정은 1985. 12. 23.(개정 186호)부터 시행한다.
2. 폐 기 :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시행 이전의 특수의무규정을 폐기한
다.

부 칙 <제257호, 1987. 11. 1.>

1. 시행일 : 이 규정은 1987. 11. 1.(개정 제257호)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0호, 1991. 8. 22.>

1. 시행일 : 이 규정은 1991. 8. 22.(개정 제340호)부터 시행한다.
2. 폐 기 :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시행 이전의 특수의무규정을 폐기한
다.

부 칙 <제391호, 1993. 8. 1.>

1. 시행일 : 이 규정은 1993. 8. 1.(개정 제391호)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7호, 1999. 1. 1.>

1. 시행일 : 이 규정은 1999. 1. 1.(개정 제507호)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94호, 2002. 11. 5.>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02. 11. 5.(개정 제694호)부터 시행한다.
2. 폐 기 :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시행 이전의 특수의무규정을 폐기한다.

부 칙 <제761호, 2003. 10. 15.>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03. 10. 15.(개정 제761호)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5호, 2007. 7. 10.>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 7. 10.(개정 제1275호)부터 부분개정

(부대개편에 따른 부대명 및 직책변경, 특수업무규정 중 공
중근무자 신체검사의 현실화 및 기준 일치) 시행한다.

부 칙 <제1377호, 2009. 5. 6.>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09. 5. 6.(개정 제1377호)부터 부분개정
(국방규정 정비체계에 따른 규정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627호, 2010. 4. 19.>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10. 4.19.(개정 제1627호)부터 일부개정
(수중근무자 시력조항 개정 공중근무자 정례신검 절차 및
항목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692호, 2011. 4. 25.>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11. 4.25.(개정 제1692호)부터 일부개정
(항공의학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의 임무 명시, 공중근무
자 신체검사 항목 조정 및 관리체계 정립, 공중근무 자격
정지 구분과 부과 절차 일원화)시행한다.

부 칙 <제1775호, 2012. 1. 1.>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12. 1. 1.(개정 제1775호)부터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관련) 시행한다.

부 칙 <제2047호, 2014. 11. 21.>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14.11.21.(개정 제2047호)부터 일부개정(수중근
무 정지 및 정지해제 절차 명확화 및 간소화, 수중근무 정
지 부과/해제시 심의위원회 설치 명문화, 신체검사 미수검사

에 대한 조치 명확화, 군 장학생 및 예비장교후보생 중 항공조종 지원자에 대한 시력교정수술 조건부 허용 관련) 시행한다.

부 칙 <제2099호, 2015. 3. 2.>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15. 3. 2.(개정 제2099호)부터 일부개정(의무실 조직개편, 수중근무자 신체검사항목 수정 관련) 시행한다.

부 칙 <제2309호, 2017.12.19.>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일부개정(항목체계 변경)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제2337호, 2018. 5.17.>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일부개정(의학적 근거 최신화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 변경, 용어수정)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제2393호, 2019. 7.15.>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일부개정(수중근무자 개인건강기록부 보관 내용수정, 잠수의무 보고 시기 변경, 공중근무자 정례신체검사 주관 부대 추가, 고속정 근무자 의무관리 업무 삭제, 신체검사 세부항목 공군 공중근무자 규정 반영하여 수정) 시행한다.

작성관

해군본부 의무실 보건정책과 특수의학담당 / 910-1725

해 군 참 모 총 장

별표 및 별지 목차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 항
1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조건)	제18조
2	<삭제 2019. 7.15>	
3	<삭제 2019. 7.15>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 항
1	수중(공중)근무자 개인 의무기록 카드	제4, 8, 11, 17, 20조
2	수중근무 정지 부과(해제) 요청서	제13조
3	수중근무 의무인가서	제12조
4	자문 의뢰서	제11, 20조
5	항공군의관 의견서	제20, 21조
6	수중근무자 특수 신체검사표	제4, 8, 9, 11조
7	수중(공중)근무자 신체 명세기록부	제4조
8	공중근무자 특수 신체검사표	제18조
9	청력 검사표	제15조
10	잠수기록표	제4, 8조

[별표 1]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조건)(제18조 관련)

정확한 비행적성 판정을 위하여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비행군의관은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의 의미를 해당 공중근무 수행의 적합성에 맞추어 고려해야 하며, 다음에 열거된 의학사항목 이외에도 비행군의관의 판단 하에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소견은 반드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의 불합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 체중, 체격

가. 공중근무 III 급

- 1) 성별과 무관하게 신장이 155cm 미만이거나 196cm 초과인 경우
다만, 공중근무자의 비행임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불합격 조건 설정이 가능함
- 2) 고성능 기종 사출좌석(Ejection seat) 근무자로서 좌고(坐高)가 86cm 미만이거나 102cm 초과하는 경우
- 3) 체중 : 표 1 의 체중범위를 미만 또는 초과하는 경우
다만, 162cm 미만의 경우 공중근무자의 비행임무를 고려하여 체중조건을 설정함

나. 공중근무 I, II급

- 1) 성별과 무관하게 신장이 162cm 미만이거나 196cm 초과인 경우
- 2) 성별과 무관하게 좌고(坐高)가 86cm 미만이거나 102cm 초과하는 경우
- 3) 체중 : 표 1 의 체중범위를 미만 또는 초과하는 경우
다만, 사출체계(Ejection systems)에 따라 추가적인 체중제한이 가능함

표 1 신장별 체중표

신장(cm)	체중(kg)	
	최소(BMI = 19 kg/m ²)	최대(BMI = 27.5 kg/m ²)
156	46.2	66.9
159	48.0	69.5
162	49.9	72.2
165	51.7	74.9
168	53.6	77.6
171	55.6	80.4
174	57.5	83.3
177	59.5	86.2
180	61.6	89.1
183	63.6	92.1
186	65.7	95.1
189	67.9	98.2
192	70.0	101.4
196	73.0	105.7

2. 두부, 안부, 경부, 두피

가. 공중근무 I, II, III급

- 1) 군복 및 무장착용에 지장이 있는 두경부 종양(종양 및 악성질환 참조)
- 2) 두개골의 불완전한 화골(化骨)
- 3) 두개골 함몰, 골절 또는 외골종의 두부기형으로서 무장착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 4) 뇌수종 또는 뇌소두증
- 5) 뇌, 척추 또는 말초신경의 질환을 수반한 두개골 기형
- 6) 손상 또는 외과수술로 인한 절단, 종양, 궤양, 누공, 얼굴의 위축, 마비 등의 외관상 추형을 나타내는 안면 및 두부의 기형
- 7) 지속성 신경통증이 있는 안면경련 마비
- 8) 두개골의 불유합 골절
- 9) 새열(Brachial cleft) 또는 갑상선관(Thyroglossal duct)에서 발생하는 누관을 동반 혹은 동반하지 않은 두경부 선천성 낭종
- 10) 모든 종류의 두경부 만성 누공
다만, 합병증 없는 이개전 낭종 및 누공은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되며 염증의 병력 및 현증의 소견을 보일 경우 수술 후 재판정 함
- 11) 경부의 임파선 비대 및 악성종양을 포함한 갑상선 및 경부 그 밖의 조직의 종양으로서 군복 및 무장착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비대 되어 있는 경우
(종양 및 악성질환 참조)
- 12) 종양, Hodgkin씨 병, 백혈병, 결핵을 포함한 경부 임파선 질환(종양 및 악성질환 참조)
- 13) 경부 근육의 비강직성 수축 및 반흔성 수축으로 군복 및 무장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14) 만성 지속성 경부 근육의 강직성 수축
- 15) 사경(Torticollis)
- 16)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경막의 파열 또는 뇌의 점성괴사와 관련된 함몰골절
- 17) 재건술에 의해 교정될 수 없는 두개골 결함 또는 교정은 가능하나 결함이 1평방 인치(6.45cm²) 이상인 경우
- 18) 이학적 검사 상 확인이 되며 동맥 또는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을 동반하는 Cervical Ribs (다만, X-ray상 발견되나 증상이 없는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 19) 산소마스크, 헬멧 또는 그 밖의 비행 장구 착용에 지장을 주는 모든 두경부 결함
- 20) 두부손상(신경계 참조)
- 21) 갑상선 이상(내분비 및 신진대사계 참조)

3. 비, 부비강, 구강, 인후

가. 공중근무 II, III급

- 1) 호흡, 회화, 저작 및 연하에 지장을 주는 구강, 비, 인후의 기형, 손상, 질환
- 2) 비호흡의 장애가 빈번하거나 부비동 환기 및 배출 장애를 유발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및 그 밖의 원인의 비 폐쇄증
- 3) 증상으로 인하여 공중근무에 제한을 주며 탈감작이나 국소 Steroid, Cromolyn 투약 등으로 증상호전이 되지 않는 알러지성 비염
- 4) 만성 비염이 정도 이상의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관 기능 이상을 초래하거나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있으며, 간헐적 국소 Steroid 요법으로 증상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 5) 위축성 비염
- 6) 기질적 질환 또는 진행성 질환에 따른 비중격 천공
- 7) 비용 및 이에 대한 병력이 있는 경우
다만, 최소 1년 이전에 수술을 받고 재발 증세가 없는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 8) 후각 손실 또는 후각 이상
- 9) 만성 부비동염
 - 가) 만성 화농성 비루, 비용, 비조직의 비후성 변화를 동반하며 이에 대한 빈번한 의학 적 주의가 필요한 경우
 - 나) 만성 부비동염이 공중근무에 지장이 될 경우
다만, Air-fluid level 또는 농성 비루는 완전히 치유될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 10) 외과적 치료로 완전 치유되지 않은 토순(Cleft lip)
- 11) 창상, 화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입술의 광범위한 결손
- 12) 혀의 부분적 결손, 기형 등의 이유로 저작, 회화 또는 연하에 지장을 주는 경우
혀의 기능을 방해하는 양성 종양
- 13) 현저한 구강염, 궤양 및 백색각화증(Leukoplakia)
- 14) 광범위한 설하 낭종성 종양
- 15) 타액루 또는 타액관 폐쇄, 타액선 또는 타액도관의 재발성 결석
- 16) 경구개 또는 연구개의 궤양, 천공, 광범위한 결손, 마비
- 17) 연구개와 인두의 유착
- 18) 편도선 만성비대가 회화 또는 연하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 19) 인후 편도선(Adenoid) 비대가 호흡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혹은 재발성 중이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
- 20) 만성 인두염 및 후두염

- 21) 인두의 신생물, 폴립, 육아종 및 괴사
- 22) 성대 마비 및 실음증
- 23) 기관 절개술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 24) 후비공의 폐쇄증 및 협착
- 25) 만성 재발성 비출혈
- 26) 비폐색을 유발하는 비인두 질환
- 27) 명확한 발음을 낼 수 없는 발성 기관의 결함
- 28) 부비강 이나 중이의 정상 환기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
- 29) 비, 부비강, 구강 또는 인후에 대한 의학적 처치로 완전한 회복이 가능
하고 그 기능이 정상으로 되는 경우는 제외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 1) 만 12세 이후 알리지성 또는 혈관운동성 비염의 병력
- 2) 부비강, 비용, 비후성 조직에 대한 외과적 처치의 병력
다만, 회복이 완전하고 그 기능이 정상이며, 객관적 또는 주관적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인 경우는 제외

4. 귀

가. 공중근무 II, III급

- 1) 이각의 전 결손 또는 광범위한 기형
- 2) 외이도의 폐쇄, 심한 협착, 또는 종양
다만, 고막의 적절한 시진을 방해하거나 외이도에 대한 치료, 처치를 방해하는 외이도의 협착 또는 변형 포함, 경한 외골종 제외
- 3) 급만성 외이도염, 단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 4) 급만성 유양돌기염 또는 유양돌기루
- 5) 급만성 화농성 중이염
- 6) 진주종성 중이염
- 7) 급만성 장액성 중이염
- 8) 재발성 카타르성 중이염(Recurrent catarrhal otitis media)
- 9) 일측 귀가 어느 음계에서나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동반하는 유착성 중이염
- 10) Meniere's syndrome
- 11) 중이내 외과적 수술의 기왕력 (다만, 고막 천자술은 제외)
 - 가) 중이 근치술(Radical Mastoidectomy)
 - 나) 단순 유양동 삭개술(Simple mastoidectomy)이나 보존적 중이 근치술 후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정상 기능이 아닌 경우

다) 내이 개창술(Fenestration operation), 등골제거술
(Stapedectomy), 합성물질을 사용한 고실성형술(Tympanoplasty)

라) 내임프낭 감압술(Endolymphatic sac decompression)

12) 이관(Eustachian tube) 기능 장애

13) 고막 천공이 공중근부에 지장이 될 경우

다만, 단순한 고막 천공이나 일시적인 통기관 삽입술은 비행임무관찰(웨이버) 부과 가능

14) 천공된 고막의 복원 수술 후 12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5) 기질적 질환과 동반되는 이명(Tinnitus)

16) 적절한 검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전정기능 이상

17) 구토, 오심, 이명, 청력장애를 동반하는 재발성 현훈

18) 청력장애 또는 전정기능의 이상을 동반하는 귀의 질환

19) 청력 및 청력측정치 기준은 표 2 참조

표 2. 청력측정치 기준

구 분	진동수 (Hz)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공중근무 I급	25	25	25	35	45	45
공중근무 II, III급	35	35	35	45	45	45

다만, 기질적인 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청력이상의 경우 의학적 소견 및 비행임무 수행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중근무자의 비행적성을 평가한다

- 공중근무 I 급은 현재 청력기준치를 적용함.
- 공중근무 II, III 급은 청력기준치에 해당하는 경우 청력에 대한 이비인 후과적 검사(기도 및 골도 청력검사,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명도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측두골 MRI 등 포함)를 시행하여 청력이상의 원인 및 정도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관리함.

청력이상	비행적성관리
회화음역 (3000Hz 이하)	비행적성자문 의뢰
고음역 (4000Hz 이상)	기질적인 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신체검사 시 청력검사를 통해 자체적 비행적성 관리

- 비행적성자문에 의뢰된 경우 ① 다음의 이비인후과적 정밀검사 항목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② 비행대대장 의견서(첨부 참조)를 통해 공중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불합격조건에서 제외 가능함.

- 기도 및 골도 청력검사
 - 어음청력검사 (90% 이상)
 - 이명도검사
 - Immittance audiometry
 - Tympanogram
 - 뇌간유발반응검사
- 정밀검사는 검사결과의 객관성을 위하여 항공우주의료원 또는 항공우주 의료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함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 1) 현훈 발작의 병력
- 2) 만성적이고 정도가 심하여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행 멀미 (Airsickness)
- 3) 재발성 항공성 중이염(Recurrent Aerotitis media)
- 4) 삭제

5. 안구 및 안부속기

가. 공중근무 II, III급

1) 안검(Lids)

- 가) 시력장애를 야기하거나 정상적인 안검 기능에 손상을 주는 모든 상태
- 나) 첩모난생(Ingrowing of eyelashes)
- 다) 안검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안구를 노출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경우
- 라) 경증 이상의 만성 안검염(Blepharitis)
- 마) 안검의 광범위한 반흔
- 바) 양측 안검의 상호 유착 또는 안검과 결막과의 유착
- 사) 안검경련(Blepharospasm)
- 아)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안검하수(Ptosis)
- 자) 안검내반(Entropion) 혹은 외반(Ectropion)
- 차) 토안(Lagophthalmos)
- 카) 무증상이고 비진행성인 양성 병변을 제외한 안검의 증식이나 종양
다만, 치료 가능한 안검의 초기 편평 상피 세포암은 제외
- 타) 급성 혹은 만성 누낭염(Dacryocystitis)
- 파) 유루(Epiphora) 및 비루관폐쇄

2) 결막(Conjunctiva)

가) 급성 결막염 (다만, 완전 회복된 경우는 불합격 기준에서 제외)

나) 만성 결막염(Vernal catarrh 포함)

다) 활동성 트라코마(Trachoma)

다만, 반흔없이 치료된 경우는 불합격조건에서 제외

라) 결막 건조증(Xerophthalmia)

마) 진행성 또는 굴절이상을 포함한 시력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익상편으로 각막침범이 1mm이상인 경우 또는 3차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 각막(Cornea)

가) 급성 또는 만성 각막염(Keratitis) 및 병력

나) 모든 종류의 각막궤양 및 재발성 각막궤양 또는 반복 각막진무름의 병력

다) 진행성이거나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각막혼탁이나 각막의 신생혈관

라) 원추각막(Keratoconus)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각막 이영양증

(1) 본 규정에 규정된 시기능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2) 질환 특성에 따라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및 합병증이 없어야 하고

(3) 질환의 특징적 증상 및 징후 또는 병변의 위치, 형태 및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발생가능한 정상적인 시기능의 장애요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불합격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때 원추각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각막이영양증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확진 및 추적관찰(질환의 특징적 증상 및 징후, 동반된 부작용 및 합병증, 시기능 평가 등을 포함)등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지정하며 또한 항공우주의료원(또는 항공우주 의료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마) 각막 성형 또는 LASIK, LASEK, PRK, 각막이식, 드림렌즈 등을 포함하여 각막의 굴절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 또는 그 병력(공중근무 III급은 제외). 다만, 군장학생 및 예비장교후보생 중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선발신체검사에서 시력교정수술(LASIK, PRK) 적합자 판정시 조건부 합격 조치하고 시력교정수술 후 회복기간(LASIK을 받은 경우 3개월, PRK를 받은 경우 6개월) 경과 후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또는 불합격 조치한다.

바) 외상성 각막열상의 병력

다만, 시력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비진행성인 경우는 제외

4) 포도막(Uveal tract)

가) 급성, 만성, 또는 재발성 포도막염

다만, 치유된 외상성 홍채염은 제외

5) 망막(Retina) · 유리체(Vitreous)

가)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및 병력

나) 망막변성(Retinal degeneration)

retinoschisis, 모든 종류의 망막색소변성 및 황반변성, 황반 cyst,
황반열공 등을 포함

다) 망막염 또는 맥락망막염 및 병력

다만, 재발 가능성이 낮고, 시력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완치된 일회성의
병력은 제외

라) 혈관종증, phakomatosis, 망막낭 및 시력에 변화를 주는 다른 선천성 유전적 질환

마) 망막출혈, 망막 삼출물 혹은 망막혈관의 장애

바) 시력저하를 야기하는 초자체 혼탁 혹은 장애

6) 시신경(Optic nerve)

가) 모든 종류의 시신경염 및 병력

나) 율혈유두(Papilledema)

다) 시신경 위축 및 시신경 창백(Optic pallor)

라) 시신경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시신경계의 선천성 유전성 질환

마) 시신경병증(Optic neuropathy)

바) 시신경 원반 드루젠(Optic Nerve Head Drusen)

7) 수정체(Lens)

가) 무수정체안(Aphakia) 및 위수정체안(Pseudophakia)

다만, 공중근무 II, III급의 위수정체안은 시력기준에 미달되지 않으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부분 또는 완전 수정체 탈구(Lens dislocation)

다) 시력장애를 초래하거나 진행성인 백내장(Cataract) 및 후발 백내장
(After cataract)

라) 안내렌즈삽입술 : ICL(Implantable Contact Lens)

8) 그 외

가) 심한 안정피로(Asthenopia)

나) 안구 및 안와종양

다) 일측 또는 양측 안구돌출증(Exophthalmos)

라) 안구진탕(Nystagmus)

마) 복시(Diplopia)

바) 시야결손

사) 생리학적 anisocoria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동공 및 정상 동공반사 소실

아) 안내 이물(Intraocular foreign body)

자) 안구결손

차) 무안구증 혹은 소안구증

카) 그 밖에 시각기능에 장애를 주는 안구 또는 안부속기의 외상성, 기질적, 선천적 이상

타) 종양(종양 및 악성질환 참조)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III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1) 시력장애를 일으키지 않아도 안검연광반사거리 2mm 미만인 경우

6. 굴절

가. 공중근무 III급

1) 굴절 이상이 +5.50 또는 -5.50 D 초과

2) 3.00 D 초과하는 난시

3) 3.50 D 초과하는 부동시

4) (삭제)

나. 공중근무 II급

1) 굴절 이상이 +3.50 또는 -4.00 D 이상의 굴절 이상

2) 2.00 D 초과하는 난시

3) 2.50 D 초과하는 부동시

다. 공중근무 I급

1) 어떠한 경선에서나 +2.00 또는 -1.50 D 이상의 굴절 이상

2) 1.50 D 초과하는 난시

3) 2.00 D 초과하는 부동시

4) 각막의 굴절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막 굴절술의 병력

5) 정확한 굴절률 검사를 위하여 검사 받기 3개월 내에 필요로 또는 임의로 Hard contact Lens를 착용하거나 검사 받기 1개월 내에 soft contact lens를 착용하는 것은 금지함

7. 원거리 시력

가. 공중근무 III급

1) 나안시력 : 양안이 20/400 미만

2) 교정시력 : 일안이 20/20 미만이고 타안이 20/30 이하

나. 공중근무 II급

- 1) 나안시력 : 양안이 20/200미만
- 2) 교정시력 : 양안이 20/20미만

다. 공중근무 I급

- 1) 나안시력 : 20/50 이하
- 2) 교정시력 : 20/20 미만

8. 근거리 시력

가. 공중근무 III급

- 1) 나안시력 : 표준 시력이 아닐 때
- 2) 교정시력 : 일안이 20/20 미만이고 타안이 20/30 이하

나. 공중근무 II급

- 1) 나안시력 : 표준 시력이 아닐 때
- 2) 교정시력 : 20/20 미만

다. 공중근무 I급

- 1) 나안시력 : 20/20 미만

9. 시야

가. 공중근무 II, III급

- 1) 어느 방향에서나 중심 15도 이내의 시야 위축
- 2) 활동성 질환으로 인한 암점(Scotoma)
- 3) 치유된 병소로 인한 암점

다만, 피검자의 공중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나. 공중근무 I급

- 1) 어느 방향에서나 중심 30도 이내의 시야 위축
- 2) 생리적 암점을 제외한 모든 암점

10. 색신

가. 공중근무 I, II, III급

- 1) 한식 색각검사표를 사용하여 검사하여,
 - 가) 12개 중 5개 이상을 구분 못할 경우 색각검사 불합격
 - 나) 12개 중 3~4개를 구분 못할 경우 색각이상을 의심하여 정밀검사(Anomaloscope) 의뢰
 - 다) 12개 중 1~2개를 구분 못할 경우 정상에 준하여 판정
- 2) 색각에 영향을 주는 모든 종류의 콘택트렌즈 및 안경사용

11. 야간시력

가. 공중근무 I, II, III급

- 1) 선천성 야맹증
- 2) 그 밖의 질환에 따른 야간 시력 저하

12. 심경각 및 입체시

가. 공중근무 I, II급

- 1) Titmus fly test에서 50초각(Arc second) 초과인 경우
- 2) (삭제)

13. 사위 및 사시

가. 공중근무 I, II급

- 1) 내사위가 10 PD 초과인 경우
- 2) 외사위가 6 PD 초과인 경우
- 3) 상사위가 1.5 PD 초과인 경우
- 4) 미세사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시
- 5) 폭주근점(Point of convergence)이 100mm 이상인 경우
- 6) 사시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6개월 경과 후 전문과 비행군의관에 따른 안구운동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판정함.

나. 공중근무 III급

- 1) 내사위가 15 PD 초과일 때
- 2) 외사위가 8 PD 초과일 때
- 3) 상사위가 2 PD 초과일 때
- 4) 15 PD 초과인 사시

14. 복시 및 억제

가. 공중근무 I, II급

- 1) 적렌즈 검사, 위쓰 4점 검사 등에서 복시 또는 억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15. 조절력

가. 공중근무 I 급

- 1) 조절력의 연령별 최저기준치 미만인 경우

표 3 조절력의 연령별 정상평균치

나 이	Diopters	나 이	Diopters	나 이	Diopters
17 -	11.8	27 -	9.5	37 -	6.7
18 -	11.6	28 -	9.2	38 -	6.4
19 -	11.4	29 -	9.0	39 -	6.1
20 -	11.1	30 -	8.7	40 -	5.8
21 -	10.9	31 -	8.4	41 -	5.4
22 -	10.7	32 -	8.1	42 -	5.0
23 -	10.5	33 -	7.9	43 -	4.5
24 -	10.2	34 -	7.6	44 -	4.0
25 -	9.9	35 -	7.3	45 -	3.6
26 -	9.7	36 -	7.0		

표 4 조절력의 연령별 최저기준치

나 이	Diopters	나 이	Diopters	나 이	Diopters
17 -	8.8	27 -	6.5	37 -	3.7
18 -	8.6	28 -	6.2	38 -	3.4
19 -	8.4	29 -	6.0	39 -	3.1
20 -	8.1	30 -	5.7	40 -	2.8
21 -	7.9	31 -	5.4	41 -	2.4
22 -	7.7	32 -	5.1	42 -	2.0
23 -	7.5	33 -	4.9	43 -	1.5
24 -	7.2	34 -	4.6	44 -	1.0
25 -	6.9	35 -	4.3	45 -	0.6
26 -	6.7	36 -	4.0		

16. 안압

가. 공중근무 I, II, III급

- 1) 안압이 30mmHg 이상인 경우
- 2) 충분한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상 안압이 22mmHg 이상이고 30mmHg 미만인 경우
- 3) 안압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유두, 시야 등의 이차적 변화가 있는 경우
- 4) 안압은 정상이나 특징적인 녹내장성 시신경유두함몰과 시야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5) 양안의 압력차가 4mmHg 이상인 경우

17. 구강 및 치아

가. 공중근무 II, III급

- 1) 정상적으로 저작할 건강한 자연치나 보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2) 결손치가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우식 치아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 제2대구치의 결손 중 기능 및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3) 매식 후 합병증을 야기 시키는 인공 치근(임플란트)이 있는 경우
다만,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의 장착이 어려울 때는 새로 매식하거나 통상의 보철물로 대체하여야 함
- 4) 악골이나 그 주위 조직에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나 부정형이 있는 경우
- 5) 저작 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부정교합으로 고정식 교정장치를 통한 교정이나 악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
- 6) 고정식 및 가철식 교정장치를 장착한 경우
다만, 교정치료가 끝난 후의 보정 장치(retainer) 또는 가철식 교정장치 장착자는 제외
- 7) 악골 결손 또는 질환으로 인하여 언어 및 저작 기능 장애를 초래할 경우
- 8) 치주질환으로 치아의 동요가 여러 치아에 있거나 치주낭이 5mm이상 있는 경우
다만,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제외
- 9) 결손치에 대한 부적합한 보철물로 인하여 치아나 치주조직에 만성적인 자극을 초래할 경우(다만,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제외)
- 10) 하악관절의 만성 관절염, 진성 또는 가성 경직, 재발성 탈구를 포함하는 측두하악 관절 장애(TMD)와 안면 근막 동통 기능 장애(MPDS)로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 1) 우식 치아, 기형치아, 보철 불량 또는 결함이 있는 수복물이 있는 경우
다만,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제외
- 2) 전치부에 광범위한 결손치가 있는 경우
다만,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제외
- 3) 악골이나 그 주위 조직에 낭종, 종양, 만성 질환 및 심한 치주 질환으로서 치유 불가능한 경우
다만,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제외
- 4) 불완전한 근관 치료가 되어 있고 치근단 병소가 존재하는 경우

다만,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제외

- 5) 정상적인 저작이 불가능하여 향후 교정치료가 예상되거나, 현재 고정성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이 진행중인 경우. 다만, 단순 미용 목적의 교정은 이미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비행입과신체검사 전까지 제거함을 조건으로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18. 심장 및 혈관계

가. 공중근무 II, III급

- 1) 심전도 소견상 다음 항목은 정상 변이로서 고려되어야 함

가) 동성 서맥 (sinus bradycardia : 분당 40~50회)

나) 동성 부정맥 (sinus arrhythmia)

다) 심박동수 분당 100회 이내에서 심방성 기외 율동(atrial ectopic rhythm)

라) 가속성 연결 율동 (accelerated junctional rhythm)

마) 심박동수 분당 100회 이내에서 상심실성 율동 (supraventricular rhythm)

바) 유주성 심방 수축 (wandering atrial contraction)

사) 불완전 좌, 우각 전도 장애(incomplete LBBB & RBBB)

아) 비특이성 심실내 전도 지연 (nonspecific intraventricular conduction delay)

자) 조기 재분극(early repolarization)에 따른 ST절 상승

차) RAD without other evidence or RVH

카) R/S >1 , 우심실 비대 소견이 없는 경우, 또는 inferior Infarction 소견이 없는 경우

타) RsR' in V1, V2 with QRS < 120ms

파) 제1도 방실 전도장애

하) 삭제

- 2) 심실기외수축(PVC)인 경우 비관혈적 심장검사(운동부하 검사, 심초음파, 24시간Holter 검사, 가속도 훈련)를 실시 한후 다음 소견일 때

가) 검사상 이상이 있으면 해당 질병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상 이상이 없으나 24시간 Holter 에서 unifocal PVC가 10% 이상일 때

다) 검사상 이상이 없으나 24시간 Holter에서 10개 이상의 couplet PVC 가 있을 때

라) 복합적(multifocal) 심실기외수축일 때

마) 운동 및 가속도 훈련에 의해 유발되거나 증가될 때

- 3) 심방빈맥으로 심실반응횟수가 100회를 넘으며, 증상을 동반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4)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PSVT), CTI(Cavo-Triscupid Isthmus)-dependent typical(or reverse typical) Atrial Flutter
다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 5) 조기 흥분 증후군 (Pre-excitation syndrome)
다만, 전기생리검사상 부정맥이 유발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여 성공 적으로 우회로가 차단된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 6) 심실성 빈맥
- 7) 제 2도 및 제 3도 방실전도장애
다만, Mobitz Type I인 경우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24시간 심전도 감시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 8) 전도장애
 - 가) 완전 좌각차단
 - 나) 이섬유속(Bifascicular block) 이상의 차단
 - 다) 완전 우각차단 및 심실 내 전도장애
 - 라) Long QT 증후군 등 그 밖의 심장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장애
다만, 가), 나), 다) 중 항공의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원인질환 원인질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9) 고혈압
다만, 6개월 이내에 항공의학적으로 인가된 약물복용으로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 가) 5일간 앉은 자세에서 측정 한 수축기 평균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평균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 나) 24시간 활동혈압을 측정하여 그 평균이 수축기 혈압 135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85mmHg 이상인 경우
 - 다) 신검당일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3회이상 측정 한 혈압의 평균이 수축기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90mmHg 이상인 경우
 - 라) 항공의학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항고혈압제를 복용중인 경우
 - 마) 고혈압에 따른 이차성 변화가 있는 경우
- 10) 저혈압 (수축기 혈압이 90mmHg이하, 이완기 혈압이 60mmHg 이하인 경우)
다만, 동반된 증상이나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 가능함

11) 심장 수술 및 그 병력

다만, 공중근무 , IIB, III급인 경우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대동맥관 개존증에 대해서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어떠한 잔재성 결손도 없다고 확인되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12) 심낭염, 심근염, 심내막염

다만, 심낭염의 병력이 일회성이고,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도 심초음파 검사 조건이 정상이며,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13)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거나 관상동맥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14) 모든 종류의 심장판막의 기질적 이상 및 수술의 병력.

가) 대동맥판 폐쇄부전

다만, 경도(mild) 미만의 역류로 그 범위가 좌심실유출로(LVOT)를 넘지 않고 다른 심질환의 동반없이 정상적인 심장기능이 확인된 경우에만 생리적 역류로 간주하고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나) 대동맥판 협착

정도에 관계없이 불합격 조건이나 압력 차가 25mmHg를 넘지 않는 정도의 협착에 대해서는 공중근무 IIB급에 한해서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다) 승모판 폐쇄부전

다만, 구조적 이상과 부정맥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moderate) 미만의 역류이면서 정상운동 능력을 유지하고 좌심실의 기능 및 크기가 정상일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라) 승모판 협착

정도와 관계없이 불합격 조건임

마) 승모판 탈출증(MVP)

다만, 가속도 훈련에 따른 심전도 monitoring을 포함하는 심장기능 평가에서 정상이고 부정맥이나 전도장애 등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바) 삼첨판 역류

다만, 부정맥이나 그 밖의 동반된 심질환이 없고 정상운동능력이면서 중등도(moderate) 미만의 역류일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사) 삼첨판 협착

정도에 관계없이 불합격 조건임

아) 폐동맥판 역류

다만, 부정맥이나 그 밖의 동반된 심질환이 없고 정상운동능력이면서 중등도(moderate) 미만의 역류일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자) 폐동맥관 협착

정도에 관계없이 불합격 조건임

15) 심부전을 포함하는 심초음파 상에서 확인된 심장의 혈액동학적 이상소견

16) 순환장애

가) 재발성 혈전성 정맥염 이나 이전의 병력

나) 경증 이상의 부종, 피부궤양, 과거 궤양으로 인한 반흔을 동반하는 정맥류

다) Raynaud씨 질환, Buerger씨 질환,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혈관질환

라) 혈관 맥류(Aneurysm)의 수술 및 병력

마) 사지에 대한 불충분한 동맥혈류

바) 혈관 내 주요 이식물이 존재하는 경우

17) 비후성, 확장성 심근병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심근병증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1) 조기홍분증후군. 다만, WPW 증후군에서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우회로가 차단되고 그에 따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2) 심잡음 (다만, 기능적 심잡음으로 확인된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3) 승모판 탈출증(MVP)

4) 고혈압

5) 제 2도 및 제 3도 방실전도장애

다만, Mobitz Type I인 경우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24시간 심전도 감시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6) (삭제)

19. 폐 및 흉부

가. 공중근무 II, III급

1)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2) 이전의 치료된 결핵(폐 이외의 다른 장기결핵 포함)이 재발한 병력 또는 결핵 간균에 대한 숙주 면역력이 명백히 저하된 경우

3) 늑막 삼출액이 있으면서 늑막 삼출액 검사 및 늑막조직 검사 상 결핵성 늑막염으로 강하게 시사되는 경우

다만, 항결핵제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한 후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하여 비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4) 원인 불명의 늑막 삼출액이 최근 2년 이내에 있었던 경우

5) 특발성 기흉

다만, 가) 일회성 특발성 기흉이 제반 평가 상 완전 치유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시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① 호기 및 흡기 흉부 방사선 촬영과 컴퓨터 단층 촬영 상 완전한 폐확장 소견
- ② 폐기능 검사가 정상
- ③ 재발 소지가 될만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나) 가)의 조건들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시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① 수술요법으로 원인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고 늑막유착술(Pleurodesis)을 시행하여 6개월 이상 관찰 후 폐기능 검사
- ② 비행군의관 입회 하에 시행하는 저압실 비행 평가에서 정상

- 6) 농흉 혹은 농흉수술 후 낭종 형성
- 7) 치유되지 않은 흉벽의 동(Sinus)
- 8) 치료되지 않은 폐, 흉곽, 흉막 및 종격동의 급성 감염증
- 9) 횡격막의 비정상적 상승
- 10) 폐기능의 장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만성 기관지염
- 11) 기관지 확장증

다만, 수술요법으로 치유가 완전하며 폐기능검사와 비행군의관 입회 하에 시행하는 저압실 비행평가에서 정상인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12) 기관지 천식

2인 이상의 비행군의관이 시행한 이학적 검사 상 천명음이 확인되고 천식 유발검사 (메타콜린 부하검사, 운동부하 검사, 또는 알레르기 반응검사 등), 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이는 경우

13) 폐소수포(Blebs) 혹은 폐대수포(Bullae), 수포성(Bullous) 혹은 전체성 폐기종이 폐기능 검사로 증명된 경우

다만, 무증상 폐소수포(Blebs) 혹은 폐대수포(Bullae)의 경우

- 가) 만 40세 이상 또는 공중근무 IIB급
- 나) 흉부 CT 상 폐수포의 크기(장경)가 3cm 이하
- 다) 폐기능검사 상 정상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14) 폐의 다발성 낭종성 질환 또는 공중근무에 부적절한 크기의 단발성 낭종

15) 폐농양의 병력

16) 폐의 만성진균감염(Coccidioidomycosis, Histoplasmosis, Blastomycosis 등) 또는 감염 후의 잔류성 병변

다만, 폐실질 혹은 폐문부위(Hilum)에 산재하는 결절성 석회화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 17) 기관, 기관지, 폐, 종격동 및 흉벽 내의 이물
- 18) 만성 유착성 섬유성 늑막염으로 폐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흉부 X-선 검사에서 병변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 19) 폐엽 절제술 또는 다수의 폐소엽 절제술의 병력이 있고 폐활량, 단위시간 폐활량 또는 최대 호흡능에 의미 있는 감소가 있거나 남아있는 폐에 병변이 있는 경우
- 20) 흉곽 내 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 그 회복이 완전하여 폐기능 검사가 정상이고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정상소견 인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 21) 기관, 기관지, 폐, 늑막 또는 종격동의 양성 및 악성 종양

다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양성 병변 및 수술로 완전 제거된 흉벽, 종격동, 늑막, 폐의 양성 병변은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단일 폐결절(크기가 3cm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흉부 방사선 검사 소견 상 변화가 없고, 양성을 의미하는 특징적인 석회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그러나 3개월 간격으로 1년간, 이후 6개월 간격으로 1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정

- 22) 유방 또는 흉벽의 양성종양(종양 및 악성질환 참조)
- 23) 늑골, 흉골, 쇄골, 견갑골 또는 척추의 화농성 골막염, 골수염 등의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 24) 삭제
- 25)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으로 인하여 흉부 용적을 감소시키거나 호흡 또는 심장 기능을 저하시켜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6) 급성 유방염 또는 만성 낭종성 유방염이 경증 이상이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 27) 폐 색전증(Pulmonary embolism)
- 28) 유방 내에 Silicone을 주입 또는 삽입한 경우
- 29) 흉곽 내부 장기의 증상을 초래하는 외상성 질환
- 30) 증상이 있는 기관 또는 기관지 협착증 및 병력
- 31) 위식도 역류, 이완불능증, 식도계실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 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 1) 특발성 기흉의 병력
- 2) 방사선 검사 상 우연히 발견된 폐침윤 소견

다만, 과거의 방사선 소견과 비교하여 비활동성으로 확인되거나 방사선학적으로 전형적인 비활동성 병변으로 인정되며 폐기능 검사가 정상인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3) 늑골횡격막각(Costophrenic angle)의 중등도 이상의 둔화소견을 나타내는 유착성 늑막염

4) 폐소수포 혹은 폐대수포

5)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다만, 항결핵제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한 후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하여 비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6) 폐소엽 절제술(Segmentectomy) 이상을 시행한 경우

20. 복부 및 내장

가. 공중근무 II, III급

1) 식도

가) 특발성 궤양, 정맥류, 분문 무이완증, 그 밖의 식도운동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나)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만성 또는 재발성 식도염

다만,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더 이상의 투약치료를 요하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되고, 증상은 없으나 sucralfate 등의 약물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는 비행임무관찰(웨이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외과적으로 치료한 경우 모든 투약을 중지하고 4개월 후 평가하여 무증상, 정상 식도 운동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제외

2) 위 및 십이지장

가)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장의 만성질환

나) 활동성 및 난치성 소화성 궤양

다만, 충분한 기간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완치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다) 출혈, 폐쇄, 천공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

다만, 치료 후 후유증이 없고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완치가 확인된 경우 웨이버를 고려할 수 있다.

라) 위 부분 또는 전절제술, 위공장 문합술, 유문부 성형술, 미주신경 절제술 등을 포함하는 위 또는 십이지장에 대한 수술병력

마) 위장관계 출혈

다만, Mallory-Weiss 증후군 또는 약물 복용 등에 따른 일시적 출혈일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증상이 있거나 출혈, 천공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

사) 증상이 있거나 수술을 요하는 위나 십이지장의 선천성 이상

다만, 유아기의 비후성 유문 협착증으로 수술 받은 경우는 제외

아) 출혈을 동반한 용종

다만, 합병증 없이 내시경적 절제술로 제거한 경우는 제외

3) 소장 및 대장

가) 장 폐색증

나) 증상을 동반하는 Meckel씨 게실

다) 경도이상의 거대결장(Megacolon)

라)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Crohn's disease를 포함하는 염증성 장 질환

마) 게실염, 국한성 장염(Regional enteritis)

바) 장절제 및 병력

다만, 합병증이 없는 소량의 장절제는 항공의학적 평가 후에 불합격 조건에서의 제외를 고려할 수 있음

아) 흡수장애 증후군(Malabsorption syndrome)

사) 과민성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다만, Manning criteria에 따른 과민성대장증후군의 경우 비행에 인가된 약물에 의해 증상이 조절되면서 심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 원인에 관계없는 만성설사

차) 출혈, 복통 등 증상을 동반한 용종

다만, 합병증 없이 내시경적 절제술로 제거한 경우는 제외

4) 간, 췌장 및 담도(Hepato-Pancreatico-Biliary Tract)

가) 바이러스성 간염

다만, 건강보유자이거나 완치된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나) 선천성 또는 기생충 질환을 포함하는 후천성 만성 간질환 및 간 낭종성 질환

다) 황달, 복수, 식도 정맥류, 비정상적인 간기능 소견을 보이는 간경화

다만, 간기능 정상, 혈액응고 검사 정상, 문맥압항진증의 간접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보상성 간경화의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담낭절제술 후 총수담관의 협착, 담도 내 결석의 재형성, 절상(Incisional)

허니아, Postcholecystectomy svndrome 등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마) 담석증 동반유무에 상관없이 확실한 병력 또는 정밀검사로서 확진된

급성 또는 만성 담낭염

바) 담석과 관련된 증상이나 합병증이 있는 담석증(다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후 재평가 가능), 담낭기능장애(Biliary dyskinesia) 및 담관의 이상 혹은 협

착

사) 담낭용종

다만, 담낭용종의 경우 임상적으로 콜레스테롤 용종이 의심되고 직경이 1cm미만 인 경우와 합병증 없이 담낭을 절제한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 급성 또는 만성 췌장염 및 이전의 병력

자) 췌장의 선천성 기형 또는 그 밖의 질환

차) 황달 또는 재발성 황달의 병력

5) 비장

가) 비장종대(비장의 직경이 13cm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다만, 혈액학적 이상과 문맥 압 항진 증거가 없는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나) 비장 전적출술

6) 복벽

가) 반흔

(1) 복벽의 기능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창상, 손상, 반흔 또는 근육의 허약

(2) 반흔 통증이 복벽 혹은 내부 장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지속적 뇨막관(Urachus)과 제장관(Omphalomesenteric duct)을 포함한 복벽동(Sinus) 또는 누공(Fistula)

나) 허니아(Hernia)

(1) 증상이 없는 작은 제(Umbilical)허니아 및 열공(Hiatal)허니아를 제외한 모든 허니아

(2) 외과적 교정 후 최소한 30일이 경과되어야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위장계통의 종양 (종양 및 악성질환 참조)

8) 위장관계 수술 후 위장관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9) 그 밖의 공중근무에 지장을 주는 위장관계 질환 또는 병력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급과 같으나 다음의 항목을 대치하여,

1) 병력 또는 정밀검사로서 확인된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

다만, 약물복용과 관련된 일회성 궤양 또는 헬리코박터균과 관련되어 세균이 확인된 일회성 궤양은 제외

2) 위장관 출혈 또는 이전의 병력

3) 간염항원 보균자

4) 비정상적 간기능 소견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이 적용됨

가) GOT 와 GPT가 75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 나) GOT 또는 GPT가 75이상 100미만인 경우는 HBsAg, HCV Ab, 그 밖의 간기능 검사(ALP, Bilirubin, GGT)등의 혈청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모두 정상소견이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 GOT 또는 GPT가 100이상인 경우 불합격
 - 라) 약물(특정 질병의 치료와는 무관한 감기약, 한약, 민간요법 약제 등)을 복용한 병력이 있는 경우 약물 복용을 최소한 1주 이상 중단 후 검사하여 위의 기준에 의해 판정함
- 5) 6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이 지속된 만성간염

21. 항문 및 직장

가. 공중근무 I, II, III급

- 1) 직장염(Proctitis)
- 2) 직장탈(Rectocele)
- 3) 직장협착(Stricture)
- 4)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크기의 외치핵
- 5) 출혈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간혈적 또는 항구적으로 탈출하는 내치핵
- 6) 항문괄약근 이상으로 인한 대변실금(Fecal incontinence)
- 7) 치루(Anal fistula)
 - 다만, 수술로 완치된 저위형 치루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 8) 만성 치열(Chronic anal fissure)
- 9) 좌골 직장농양(Ischiorectal abscess)
- 10) 염증이나 분비가 2년 이상 지속된 모소동(Pilonidal sinus)

22. 내분비 및 신진대사계

가. 공중근무 II, III급

- 1) 당뇨병 또는 신장성 당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지속성 당뇨
- 2) 갑상선종으로서 압박증상을 수반하거나 공중근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3)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갑상선 중독증
- 4) 갑상선 기능 저하증
- 5) 모든 종류의 갑상선염(Thyroiditis)
- 6)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을 포함하는 부신기능 이상
- 7) 요붕증(Diabetes insipidus)
- 8) 지방성 성기 이상영양증(Adiposogenital dystrophy, Frohlich's syndrome)
- 9)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10) 통풍(Gout)
- 11) 관련 증상을 동반하는 인슐린 과다증
- 12) 부갑상선 기능 이상
- 13) 뇌하수체 기능 이상
- 14) 수술 후 또는 자연 발생한 점액종(Myxedema)
- 15) 영양결핍성 질환(Sprue, Beriberi, Pellagra, Scurvy 등)으로서 경증 이상
이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영구적인 병변을 동반한 경우
- 16) 가족성 고지혈증 (Familial hyperlipidemia)
- 17) 고지혈증(Hyperlipidemia)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불합격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방법(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과 동반된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불합격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와 같으며 부가하여,

- 1) 통풍 및 병력

23. 혈액 및 조혈계

가. 공중근무 II, III급

- 1) 각종 원인으로 인한 빈혈
- 2) 적혈구 증다증 (Polycythemia)
- 3) 겸상적혈구성 빈혈(Sickle cell anemia) 또는 지중해성 빈혈 (Thalassemias)을 포함한 각종 혈색소 이상증 (Hemoglobinopathies)
다만, Sickle cell trait 인 경우 저압실 비행 등 저산소 환경에서의 증상 또는 과거의 병력을 고려하여 판정함
- 4) 출혈성 질환(Hemorrhagic disorders)
 - 가) 혈우병(Hemophilia)을 포함한 혈액응고 계통의 이상
 - 나) 혈소판 결핍증(Thrombocytopenia) 또는 혈소판 증다증(Thrombocytosis)
혈소판 수가 10만/mm³ 이하이거나 40만/mm³ 이상인 경우는 정밀 검사 필요로 하고, 혈소판 수가 75만/mm³ 이상인 경우는 불합격 조건임
 - 다) 혈소판 기능 이상(Platelet dysfunctions)
 - 라) 혈관 장애(Vascular disorders)
- 5) 백혈구 감소증(Leukopenia)
다만, 백혈구 수가 750/mm³ 이상, 3500/mm³ 이하인 경우는 정밀 검사 필요로 하고, 백혈구 수가 750/mm³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조건임
- 6) 모든 종류의 백혈병(Leukemias)

- 7) 모든 종류의 골수증식성 질환(Myeloproliferative disorders)
- 8) 모든 종류의 림프종(Lymphomas)
- 9) 형질세포질환(Plasma cell dyscrasia)
 - 가) 다발성 골수종
 - 나) 마크로글로불린혈증
- 10) 혈전성 전색증 질환(Thromboembolic disease)
 - 다만, 급성이면서 재발하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1) HIV 또는 HIV Ab 존재가 증명된 면역 결핍성 질환(Immunodeficiency syndromes)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및 III와 같으며 부가하여,

- 1) 각종 공중근무자 선발신검에서 혈액검사 상 헤모글로빈 10 g/dl 미만이고 헤마토크리트 30% 미만이면 원인과 관계없이 불합격 조건임

24. 신경계

가. 공중근무 II, III급

- 1) 중추신경계 감염증

다만,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 후 신경학적 검사 상 정상이고, 증상이 완전 소멸되었으며, 원인규명이 되어 재발 가능성이 없고, 신경방사선검사,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상 정상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중근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 뇌혈관 질환

가) 동맥경화증, 죽상 혈전성 뇌경색, 일과성 허혈 발작, 색전성 뇌경색, 폐색성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모든 허혈성 뇌졸중

나) 고혈압성 뇌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중추신경계의 동정맥기형 혹은 동맥류에 따른 출혈을 포함한 모든 두개내 출혈 또는 과거의 병력

다) 고혈압성 뇌병증

라) 뇌동맥의 염증성 질환

마) 뇌정맥 및 정동맥의 혈전증

- 3) 뇌수두증과 뇌막반응을 포함한 뇌척수액 순환장애

- 4) 뇌실질 및 뇌막을 침범하는 두개 내 종양과 파라네오플라ستيك 질환

- 5) 뇌의 방사선 조사 손상

- 6) 다발성 경화증 또는 그 밖의 탈수초성 질환

- 7) 신경계의 유전성 대사질환

- 8) 신경계 발달의 이상
 척추분열증, 모반증(결절성 경화증, 신경섬유종증),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동반한 피부 혈관종증, 뇌저합입, 수막류, 지주막 낭종, 척추공동증, 척수건인증후군, 뇌척수수막류, 아놀드-키아리 기형, 댄디-워커 기형, 대뇌 혹은 소뇌발육부전 등을 포함
- 9) 신경계 변성 질환
 가) 진행성 치매 또는 치매가 다른 신경학적 이상들과 관련되는 경우
 나) 자세와 운동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
 다) 제한성 운동 이상증과 근긴장 이상을 보이는 경우
 라) 진행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
 마) 유전적 다발성 근간대 경련
 바) 그 밖의 정상적인 운동기능을 방해하는 진전, 무도병, 이긴장증이나 다른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포함하는 운동신경계 질환
- 10) 신경계의 후천성 대사장애
 가) 착란, 혼미 또는 혼수 등의 증후군, 진행성 추체외로 증후군, 소뇌성 실조증, 또는 정신병이나 치매를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
 나) 일산화탄소나 납 등의 독성물질에 따른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계 의 급성 중독
- 11) 영양결핍에 따른 신경계 질환
- 12) 척수의 질환
 가) 척수염
 나) 척수의 혈관 질환(척수경색, 척수 및 척수관내로의 출혈)
 다) 아급성 또는 만성 대마비
 라) 상완 근위축을 동반한 분절적 감각해리의 척수공동증후군
- 13) 말초신경 질환
 가) 신경염, 신경통, 신경성 질환 혹은 신경근 질환
 다만, 증상이 소멸되었고 원인규명이 되어 재발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면서 혈청 및 뇌척수액 검사, 신경생리학적 검사 상 정상인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나) 다발성 신경염
 다만, 일회성이고 급성상태가 소멸된 후 일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혈청검사, 신경생리학적 검사상 정상인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통 또는 말초신경마비
 다만, 증상이 소멸되었고 이학적 검사 상 정상이며 재발 가능성이 없는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14) 간질 및 경련성 질환

가) 모든 형태의 경련성 질환(Convulsive Disorder) 또는 과거의 병력

다만, 진단이 명확하고, 치료 종결 후 5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신경학적 검사 및 신경영상검사, 뇌파검사 상 정상인 경우는 공중근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나) 이상뇌파 소견

(1) Generalized, Lateralized, or Focal spikes, 각성상태에서의

Sharp and Slow wave complex, Sharp wave, Spike-Wave complex,

졸음 또는 수면을 포함한 간질 유사 이상

다만, Small sharp spike, Rhythmic temporal theta of drowsiness,

Benign epileptiform transients of sleep, Wicket spikes

6 hertz(phantom) spike and wave 또는 14, 6 hertz positive

spike 등의 양성의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는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2) 원인불명으로 각성상태에서 Generalized, Lateralized or Focal

continous polymorphic delta activity를 보이는 경우

15) 두부 외상에 기인하지 않은 의식장애

다만, 한 차례의 Neurocardiogenic syncope(Vasovagl syncope 포함)이 venipuncture 나 장시간의 기립 또는 이와 유사한 자극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의식소실기간이 1분을 넘지 않고 요실과 변실(Loss of Continence) 없이 빠른 시간에 완전 회복한 후 신경학적 및 심혈관학적 검사로 이상이 없다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가) 가속도 훈련 도중 고도의 G에 따른 의식상실(G-LOC)은 동반된 다른 질환 또는 해부학적 이상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나) 비행 도중 발생한 G-LOC의 경우 적절치 못한 항 G Maneuver 또는 항 G 장치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생리학적 의식상실로 간주하여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원인불명인 의식 장애나 상실은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없음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16) 완전 자율신경마비, 보툴리누스 중독, 원발성 자율신경 부전증(특발성 기립성 저혈압), 이차성 기립성 저혈압을 동반하는 말초신경병증, Horner증후군과 성상신경절 증후군, 자율신경계 장애를 포함하는 자율신경계 장애

17) 기면증과 탈력발작, 본태성 과수면을 포함하는 수면장애

18) 두통과 두개안면 통증

가) 편두통과 편두통의 변종

나) 군발성 두통

다) 측두 동맥염, 양성 두개강 내 고혈압, 뇌종양에 따른 두통 등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 밖의 원인에 따른 두통

라) 삼차신경통, 설인신경통, 포진 후 신경통 등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 밖의 두개안면통

다만, 증상이 완전 소멸되었고 원인규명이 되어 재발가능성이 없으며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될 수 있음

19) 두부외상의 병력이 있으면서 다음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가) 외상 후 경련. 단 외상 당시 발생한 경련은 제외

나) 반측부전마비(Hemiparesis)나 반맹증(Hemianopsia) 등 중추신경계 실질의 손상을 나타내는 지속적 장애가 있는 경우

다) 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지능장애나 성격변화 등의 기질적 뇌손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

라)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중추 신경계 단락술을 시행한 경우

20) 두부외상

다만, 골절이 없고 의식상실 또는 기억상실이 30분 이내인 정도의 두부외상으로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 상 정상일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21) (삭제)

22) (삭제)

23) 개두술 및 두개골 결손의 병력

24) 외상성이고 다발성인 말초신경 손상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1) 원인불명의 졸도(Syncope)

2) 경련성 발작(Convulsive Seizure)

다만, 만 5세 이하에서 열(熱)성 질병과 동반된 발작은 뇌파검사로 이상이 없는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혈관성, 편두통성, 군집성의 재발성 두통의 병력

4) 중추신경계의 신생물 병력

5) 진단 또는 치료 목적의 개두술의 기왕력

6) 두부외상의 병력

- 가) 경도의 경우, 손상 후 1개월 이상
 - 나) 중등도의 경우, 손상 후 2년 이상
 - 다) 고도의 경우, 손상 후 5년 이상
- 경과 후 재평가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 상 정상일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7) (삭제)
 - 8) (삭제)

25. 정신 질환

가. 공중근무 Ⅱ, Ⅲ급

- 1) 섭식 장애
- 2) 성 정체성 장애
- 3) 일반 의학적 상태에 따른 정신 장애
- 4) 섬망, 치매, 기억상실 장애 및 그 밖의 인지 장애
- 5) 물질 사용 장애
- 6) 조현병 및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또는 이전의 병력
- 7) 기분 장애 또는 이전의 병력
 - 가) 주요 우울 장애, 기분 부전 장애, 기분 순환성 장애, 그 밖의 우울 장애
 - 나) 양극성 장애
- 8) 불안장애

만약 비행 군의관 판단하에 공포증이 아닌 “비행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염려의 표현”인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 9) 신체형 장애
- 10) 해리성 장애
- 11) 성적 도착증

의학적 불합격 조건은 아니지만, 진단된 사람은 행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12) 성 기능장애, 그 밖의 성 장애

다른 I축 장애와 연관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 13). 수면 장애
 - 가)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나) 적응장애 외의 I축 장애와 연관된 경우
- 14) 인위성 장애
- 15) 그 밖의 충동 조절 장애
- 16) 60일 이상 지속되는 적응장애
- 17) 인격 장애
 - 가) 장애가 매우 심하여 반복적으로 비행안전, 동료와의 조화, 임무 수행에 심각하게 방해가 될 경우

나) 다만, 임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의학적 이유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 비행안전, 동료와의 조화, 임무 수행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부적응적 행동 양식
혹은 인격장애 진단에는 충족되지 않으나, 부적응적 인격 특성

18)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의 과거력

19)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서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0) (삭제)

나. 공중근무 I 급

II, III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1) 양 부모의 조현병 혹은 양극성 장애의 가족력

2)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학습 장애

다만, 최근 12개월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학업 수행 평가에 통과한 경우는 제외

3)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예상되는 심각하고 만성적인 행동 장애 혹은 인지 장애

26. 비뇨 생식기계

가. 공중근무 II, III급

1) 요로 결석

가) 결석제거 전까지는 불합격에 해당하나 결석제거 후 신기능이 정상이고 다른 배경 질환의 증거가 없을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나) 신실질 석회화, 신석회증의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검사 상에서 석회화가 신실질 안이나 신낭종안에 완전히 위치하고 집뇨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를 고려할 수 있음

다) 대사성 결석 또는 해부학적 이상(신배계실, 요관계실, 중복요관, 요관협착)을 동반한 결석인 경우는 불합격 조건임

2) 1년에 2회이상 또는 2년에 3회이상의 재발성 요로결석

3) 신염, 신우염, 신우신염

다만, 합병증없이 치유된 급성질환의 경우 불합격조건에서 제외

4) 일측 신장의 결손 또는 저형성

5) 일측 혹은 양측 신장의 기능적 장애

6) 마제철신(Horseshoe kidney)

7) 다낭성 신장(Polycystic kidney)

8) 수신증(Hydronephrosis) 또는 농신증(Pyonephrosis)

9) 비뇨생식기 종양 및 병력(종양 및 악성질환 참조)

10) 지속 또는 재발하는 혈뇨

다만, 신초음파, IVP, 24시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에 검사상 이상 없거나 조직학

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순 특발성 혈뇨인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함

- 11) 원도뇨(Cylindruria), 헤모글로빈뇨(Hemoglobinuria)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신장의 이상을 나타내는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 12) 정상 활동하에서 200mg/24hrs 초과인 단백뇨 또는 임의소변검사에서 protein to creatinine의 비가 0.2 초과인 경우
- 13) 만성 방광염
- 14) 요도협착
- 15) 요도상열, 요도하열

다만, 귀두부인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능

- 16) 음경 절단(Penile amputation)
- 17) 반음양(Hermaphroditism)
- 18) 뇨로누공(Urinary fistula)
- 19) 요실금(Urinary incontinence)
- 20) 요류전환(Urinary diversion)
- 21) 음낭수종(Hydrocele)

다만, 수술 후 치유된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능

- 22) 정계 정맥류
다만, 원인질환 없이 수술 후 완치된 경우는 불합격조건에서 제외가능
- 23) 정류고환(Undescended testicle), 양측 고환이 없는 경우
- 24) 호르몬검사 또는 정액검사상 이상이 있는 약측 고환위축
- 25) 만성 고환염 및 만성 부고환염
- 26) 성전환 또는 외과적 교정이 요구되는 합병증(유착이나 광범위한 상흔 등)
- 27) 선천성 또는 후천성으로 인한 생식기의 현저한 이상 및 결함
- 28)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기질적 결함에 따른 야뇨증(Enuresis)
- 29) 요배설에 장애가 되거나 고혈압, 통증을 유발하는 신하수증
- 30) 만성 전립선염
- 31) 치료가 필요한 전립선 비대증
- 32) 신경인성방광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및 III와 같으며 부가하여,

- 1) 비뇨 생식기계의 급성 감염 및 염증성 질환
다만, 완치가 되었을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2) 최근 12개월 내의 신결석 병력
- 3) 최근 24개월 내의 제석술을 시행 받은 병력

다만, 요로결석 크기가 5mm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12개월 내의 요로결석 병력을 적용

27. 여성 생식기계

가. 공중근무 II, III급

- 1) 임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자궁증대
- 2) 증상을 동반하는 만성 질염
- 3) 만성 난관염 또는 난소염
- 4)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 5) 난소 낭종 단. 단순 기능성 낭종은 제외
- 6) 증상을 동반하는 모든 생식기관의 선천적 이상
- 7) 공중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생리통
- 8) 다월경, 무월경, 다량월경 또는 생리주기의 현저한 불규칙을 포함하는 생리불순
- 9) 현저한 증상을 동반하는 생리적 또는 수술적 폐경증후군
- 10) 증상을 동반하거나 약물치료를 요하는 자궁내막증
- 11)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 위치이상
- 12) 만성 외음부염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 1) 자궁내막증의 병력

28. 근골격계

가. 공중근무 II, III급

1) 일반 사항

- 가) 정도 이상의 관절염으로 활동적 육체활동에 제한이 되거나 비행임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나) 류마티스 관절염
- 다) 급성, 아급성골수염 및 만성골수염 (확인된 사골 및 부골형성 또는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라) 골다공증·골감소증
- 마) 골연골종증 또는 다발성 연골 외골종증(exostoses)
다만, II, III급에 한해 외과적 처치를 시행하여 완치된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 바) 골관절 질환(질병, 외상, 선천성)에 따른 변형, 불안정성, 통증, 강직, 운동범위 제한으로 훈련이나 활동적 육체활동, 비행임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사) 정복되지 않은 탈구, 주요 관절의 습관성 탈구 또는 아탈구로 이학적 검사 또는 특수검사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1) 견관절

① 전방탈구

전방 탈구의 과거력과 이학적검사에서 불안정성이 확인되며, 영상의학적 검사 (MRI)에서 Bankart lesion 혹은 Hill-Sach's lesion이 관찰되는 경우

② 견관절재발탈구의 병력이 없으면서 습관성아탈구 증상을 보이는 경우(단순 AMBRItyp)로 부하방사선촬영상 3분의 1이상의 아탈구소견이 보이면서 이학적 검사상 양성인 경우

(2) 그 외 관절

탈구로 치료 이 후에도 지속적인 불안정성이 남은 경우

아) 정도 이상의 증상이 있는 주요관절 불안정, 또는 수술 이후 불안정, 근력약화, 심각한 근육위축으로 인해 훈련이나 활동적 육체활동, 비행임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자) 주관절 부위 골절로 20° 초과, 주관절부위 제외한 부위 골절로 10° 초과 변형이 있거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정유합

차) 증상이 있는 그 밖의 골절 후유증(가관절형성, 불유합 포함)

키) 척추 및 하지 뼈의 골절후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체내 내고정물이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장관골 골수강내 금속정, 대퇴골, 경골 및 종골(Calcaneus)의 금속판은 불합격 조건임)

파) 근육 마비, 부전마비(paresis), 구축(contracture), 위축(atrophy)이 진행하거나 비행임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하) 관절내에 증상이 있는 유리체가 존재하는 경우(골연골, 금속성 이물질 포함)

거) 지속적인 종창 또는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 동반되는 활액막염

너) 골괴사

더) 연골연화증(증상이 있거나 관절 삼출 과거력으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러)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머) 선천성 근육 강직증(myotonia congenita)

버) 광범위한 반흔, 유착 또는 통증을 동반하는 신경종에 의해 활동 및 장구착용에 제한이 되는 경우

서) 증상이 있는 절단단(amputation stump) : 신경종, 골극, 유착반흔, 궤양

2) 상지

가) 손 또는 손가락에 한 개 이상 분절의 결손

나) 손가락 관절을 제외한 관절의 절제

다) 다지증

라) 손이나 손가락의 반흔, 변형으로 순환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외상이나 질환의 회복 이후에도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근력 약화나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약력은 정상 손과 비교하여 예상되는 정상 근력의 75% 이하인 경우 (비우세손의 정상 약력은 우세손의 80%)

바) 관절운동범위 감소

(1) 견관절 (정상 : 0~180도)

굴곡 : 150도 미만

외전 : 150도 미만

(2) 주관절 (정상 : 0~150도)

굴곡 : 120도 미만

굴곡구축 : 10도 초과

(3) 전완부 회내전, 회외전 (정상 : 0 ~ 80도) : 40도 미만

(4) 수근 관절 (정상 : 굴곡 80도, 신전 70도)

굴곡 : 30도 미만, 신전 : 30도 미만, 굴곡+신전 : 60도 미만

(5) 지관절

손의 3대 기능 중 하나라도 소실되는 경우. 엄지는 다른 수지와 대립이 불가능한 경우

3) 하지

가) 족부 및 하지의 절단이나 결손(엄지 발가락 포함)

다만, 2번째부터 5번째 발가락은 두 개 이상 결손일 경우

나) 만곡족 (clubfoot)

다) 강직성 편평족, 증상을 동반한 편평족 또는 직접측면방사선상 거골의 종축과주상골과 제1 중족골의 종축이 이루는 각도(Talo-1st Metatarsal각도)가 15도 이상인 경우

라) 족근골 결합(tarsal coalition)

마) 현저한 족부 외반, 후족부 외반,

또는 증상 유무 관계없이 거골 내회전로 족부 내측연이 현저히 돌출된 경우

바) 증상이 있거나 제1중족골종축과 모지의 종축이 이루는 각이 30도 이상인 경우

사) 중족골두 아탈구와 갈퀴 족지 변형을 초래하는 요족 변형

소족지의 영구적 굴곡변형과 관계된 횡아치 소실

아) 족부의 질병, 외상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 또는 심한 불편감을 초래하여 공중근무에 방해가 되거나 군화 착용이 어려울 경우

자) X-ray 상 관찰되는 잔존 변형 또는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선천성 고관절 탈구, Legg-Calve-Perthes 병, 대퇴 골두 골단 분리증의 병력

차) 2년 이내 고관절 탈구 과거력, 또는 고관절 탈구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X-ray 상 확인될 경우

카) 2.0cm 이상의 하지 부동 (하지길이는 ASIS부터 내측 복사뼈 원위부까지 또는 Lower extremity scanogram에서 측정)

타) 슬관절 이상

(1) 반월상 연골의 전위 또는 슬관절내 유리체

(2) 슬관절 인대의 불안정성이 남아있을 경우

(3) 건축과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근육 위축이나 근력 약화가 있을 경우

(4) 관절운동범위 감소 또는 슬내장증의 증상이 있을 경우

(5) 공중근무에 제한이 되는 슬관절 상태

(6)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동반한 불안정증이 있는 상태

다만,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보존적 치료 이후 이학적 검사상 grade 1이하의 전위가 확인된 경우 또는 Stress X-ray에서 5mm 이하의 전위를 보이는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7)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3분의 2이상 절제한 경우

과) 슬관절 또는 족관절의 박리성 골연골염

하) 오스군씨 병 (증상이 있거나 경골 조면이 두드러지게 돌출되고, X-ray상 분리된 골편이 관찰될 경우)

거) 관절운동 제한

(1) 고관절

굴곡 : 100도 미만 (정상 : 0~140도)

내외측의 회전각의 합 : 60도 미만 (정상 : 내회전 40도, 외회전 50도)

(2) 슬관절 (정상 : 0~135도)

굴곡 : 120도 미만

굴곡구축 : 10도 초과

(3) 족관절

배굴 : 10도 미만 (정상 : 30도)

저굴 : 30도 미만 (정상 : 50도)

내변 및 외변의 합 : 10도 미만(정상 : 30도)

너) 보행, 행군, 달리기 또는 점프에 장애가 되는 족지 강직

더) 아킬레스건의 손상

다만, Single Heel Raise가 가능하고 족관절 운동장애가 없는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1)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3분의 1이상 절제한 경우

29. 척추 및 그 밖의 근골계

가. 공중근무 I, II, III급

1) 척추나 천장관절의 질환 또는 손상의 병력으로 인하여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모든 종류의 척추관절염(다만, MRI에서 퇴행성 변화 등의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3) 활동성 또는 치유된 척추의 육아종성 질환

4) Cobb method에 의해 요추 20도 이상인 또는 흉추 25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

5) 비행복 착용시 기형 또는 통증을 유발하거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진행성

척추 이상굴곡(Abnormal curvature)

6) 증상을 동반하는 척추 전위증 또는 척추 분리증

7) 추간판 탈출증의 병력 또는 이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나 화학수핵용해술을 시행받은

경우. 다만, 증상이 없는 추간관 팽윤은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8) 척추의 탈구나 골절

다만, 횡돌기의 골절 병력이 있으나 무증상일 경우는 제외

9) 한개 이상의 척추를 침범한 척추열(Spina Bifida)이 동일부위 피부 함몰을 동반하고 있거나 척추열을 수술적으로 교정한 기왕력이 있는 경우

10) 방사선 검사 상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척추후만(Kyphosis)을 동반하는 소년기 골단염(Juvenile Epiphysitis)

11) 삭제

12) 요부의 고정 또는 통증경감을 위해 외부지지 기구가 필요한 경우

13) 심한 재발성 하부 요통 또는 경부통

14) 척추의 외과적 융합

15) 신경인성 파행 또는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척추강 협착증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30. 피부

가. 공중근무 II, III급

1) 아토피성 피부염(Atopic Dermatitis)

다만, 활동성 또는 잔류병소가 안면부, 경부, 슬와부 등 특징적인 부위에 있는 경우

2) 낭종성 피부질환

가) 군장(헬멧, 마스크, 낙하산 하네스 등) 착용에 지장을 주는 부위에

위치한 낭종성 피부 질환(예, 모낭종, 천굴성 농포성 모낭염, 화농성 한선염 등)

나) 종양 또는 배농성이 있는 모발낭포(Pilonidal cyst)

3) 색소성 모반, 혈관성 모반 및 혈관종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 삭제

나) 기능장애를 유발한 경우

다) 지속적 자극에 노출되어 궤양을 형성하는 경우

4) 삭제

5)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 수포성 표피박리(Epidermolysis Bullosa), 천포창(Pemphigus), 유사천포창(Bullous)

- pemphogoides, 포진상 피부염(Dermatitis herpetiformis), 선상 IgA수포성 피부증 (Linear IgA bullous dermatosis), 양성가족성천포창(Hailey-Hailey disease) 등
- 6)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습진
 - 7) 상피성(Elephantiasis) 또는 만성 임파부종(Lymphedema)
 - 8) 삭제
 - 9) 삭제
 - 10) 광범위하거나 재발성인 만성 질종증(Furunculosis)
 - 11) 삭제
 - 12) 심한 어린선(Icthyosis)
 - 13) 삭제
 - 14) 나병(Leprosy)
 - 15) 피부 백혈병(Leukemia Cutis) 또는 균상식육종(Mycosis Fungoides)
 - 16) 편평태선(Lichen Planus)
 - 17)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홍반성 루푸스
 - 18) 신경 섬유종증(Von Recklinghausen's Disease)
 - 19) 다형 광발진 또는 광선 담마진 같은 광과민성 피부질환
 - 20) 건선(Psoriasis)
 - 21) 방사선 피부염(Radiodermatitis)
 - 22) 화상 후 혹은 외상 후 반흔(Scar)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운동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
 - 나) 군장착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 궤양을 형성할 경향이 있는 광범위하고 심부성이며 유착성인 경우
 - 라) 삭제
 - 23) 경피증(Scleroderma)
 - 24) 문신이 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이 7cm 초과인 경우 또는 5군데 이하로 합계면적이 30cm² 이상인 경우. 신체의 6군데 이상 있는 경우 합계면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 25) 피부결핵
 - 26) 단순 피부묘기증을 제외한 만성 또는 재발성의 두드러기 및 맥관부종
 - 27)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족부 우체(Verruca Plantaris)
 - 28) 증상과 고지질혈증을 동반한 황색종(Xanthoma)
 - 29) 중등도 이상으로 다른 장기를 침범한 유육종(Sarcoid)
 - 30) 공중근무 시 군장 착용(헬멧, 마스크, 낙하산 장구)에 지장을 주는 모든 만성피부질환(습진, 진균감염, 켈로이드, 모공성 홍색 비강진 등)
 - 31) 합병증을 동반한 Henoch-Schonlein purpura

나. 공중근무 I급

공중근무 II, III 급과 같으며 부가하여,

- 1) 건설의 이전 병력
- 2) 아토피성 피부염의 잔류병소가 있는 경우
다만, 2주 후 재평가하여 변화가 없는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최초 선발시에만 적용)
- 3) 손, 발의 만성 또는 심한 다한증(Hyperhidrosis)

31. 종양 및 악성 질환

가. 공중근무 I, II, III급

- 1) 악성의 경향을 보이거나 진행성인 양성종양, 또는 군복 및 군장착용 등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양성종양
- 2)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악성종양
다만, 전이가 전혀 없고, 재발의 우려가 없으며, 치료에 따른 기능장애 및 동반된 합병증이 없는 등 완치로 판단되는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의 관찰 후 항공의학적 재평가 가능
 - 가) 각종 검사로 확진된 조기위암의 경우 양성적인 경과를 고려하여 점막 제거술, 레이저 혹은 전기 소작술 등의 내과적 처치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단되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술적 처치를 받은 경우는 해당 조항에 따라 판정함
 - 나) 자궁경부의 악성종양으로 Basal cell, Squamous cell carcinomas 또는 Carcinoma-in-situ 인 경우 조직학적으로 완전 절제되어 치유되었다고 판단되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32. 전신질환 및 그 외

가. 공중근무 I, II, III급

- 1) Sarcoidosis
- 2) Eosinophilic Granuloma
- 3) Gaucher's Disease
- 4) Schuller-Christian Disease
- 5) Litterer-Siwe's Disease
- 6) Porphyria
- 7) Hemochromatosis
- 8) Amyloidosis

- 9) 강직성 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 10)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홍반성 낭창(Lupus erythematosus)
- 11) 복합성 결체 조직 질환(Inflammatory idiopathic diseases of connective tissue)
- 12) Sjogren's Syndrome
- 13) 내장기 진균 감염
- 14) 만성 금속 중독
- 15) 이황화탄소, 삼염화에틸렌, 사염화탄소 및 메틸셀루로오스 등의 산업용제 및 그 밖의 화학물질의 만성적 중독
- 16) 한랭손상의 후유증으로 다음 조건을 수반할 때
 - 가) 심부성 동통
 - 나) 이상감각
 - 다) 발한과다
 - 라) 청색증(Cyanosis)
 - 마) 한냉 담마진
 - 바) 관절강직
 - 사) 손가락 또는 발가락 절단
- 17) 온열손상의 병력이 있으면서 비정상적인 heat tolerance threshold 가 증명되는 경우
- 18) 선천성 또는 후천성 매독

다만, 1기 또는 2기 매독의 병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됨.

 - 가) 피검자가 증상이 없을 때
 - 나) 활동질환의 증상 및 후유증이 없을 때
 - 다) 혈액 및 척수액 VDRL 검사가 음성일 때
 - 라) 적절한 매독 치료를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 마) 중추신경계의 침범의 증거나 병력이 없을 때
- 19)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라리아

다만, 말라리아의 병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됨

 - 가) 적절한 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 나) 피검자가 최근 6개월 이상 말라리아 치료를 받지 않고도 증상이 없을 때
 - 다) 적혈구의 수나 형태가 정상이고 빈혈의 증거가 없을 때
 - 라) 혈액도말검사서 병충이 음성으로 나타날 때
- 20) 탈감작 치료(Desensitization therapy)를 요할 정도의 알러지 질환(Allergic disorders)

- 21) 면역접종에 대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어 어떠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예외가 되는 경우
- 22) 일차성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Immunodeficiency syndromes)
- 23) 다음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한 약제(Medications)의 사용은 해당 질환의 치유와 약제사용이 중단될 때까지 불합격 조건 또는 비행임무관찰(웨이버)에 해당됨
- 가) 비행군의관의 처방 없이도 사용 가능한 약제
- (1) 국소 항생제 연고
 - (2) 국소 항진균제 연고
 - (3) 국소 항바이러스제 연고
 - (4) 1% Hydrocortisone 연고
 - (5) 상처소독을 위한 Benzoyl peroxide
 - (6) 경한 질환의 진통 효과를 위한 일회성의 Aspirin, Ibuprofen, Acetaminophen 사용
 - (7) 경한 상복부 불편감 해소를 위한 제산제(Antacids)
 - (8) 항문질환 치료를 위한 좌제(Suppositories)
 - (9) 발열을 동반하지 않은 설사 치료를 위한 Bismuth subsalicylate
 - (10) 종합비타민제(한종류 및 하루 한알 이하)
- 나) 비행군의관의 처방에 의해 비행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용 가능한 약제
- 다만, 필요한 경우 약물에 대한 반응 확인을 위한 관찰기간을 가져야 하고, 비행임무 전 약제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1)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Chloroquine, Primaquine, Doxycycline
 - (2) 화학전 예방을 위한 Pyridostigmine
 - (3) 경한 급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단기간의 경구용 Penicillin, Ampicillin, Oxacillin, Dicloxacillin, Erythromyc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Tetracycline, Doxycycline, Cephalexin
 - (4)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Cholestyramine(Resin binding agents)
 - (5) 무증상 질염 치료를 위한 질연고 또는 좌제(Vaginal creams, Suppositories)
 - (6) 경구 피임약(Oral contraceptives)
 - (7) 국소 항 바이러스제제(Topical Acyclovir)
 - (8) 니코틴 금연보조제(다만, 최소 72시간의 지상 관찰기간 필요)
 - (9) 비행멀미 예방목적의 경피적 Scopolamine(다만, 단독비행 시는 사용불가)
 - (10) 조종사 피로관리를 위한 각성제 중 Provigil®(Modafinil)

- 전·평시 조종사 각성제 사용지침을 따른다. 다만, 지상투여 검사에서 이상 없는 경우 사용 가능

(11) 조종사 수면위생을 위한 수면제 중 Stilnox[®](Zolpidem)

- 전·평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허가된다. 다만, 지상투여검사에서 이상 없는 경우 사용 가능

- ① 부적절한 환경에서 수면(소음, 고온 등)
- ② 흥분, 염려, 불안 등으로 인한 불면증
- ③ 임무로 인한 수면주기 변동으로 인한 불면증

다) 위에서 명시된 약물 이외의 약물 복용 또는 지속적인 약물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는 비행직성 자문을 통해 비행임무관찰(웨이버)을 부과 받는 조건으로만 복용이 가능함.

[별표 2] 삭제 <2019. 7.15.>

[별표 3] 삭제 <2019. 7.15.>

수중(공중) 근무자 개인 의무기록 카드

사 진	생년월일		년	월	일생(만			세)					
	잠수(비행)	기별		출신기별		군사특기							
	입대 또는 임관 연월일			년	월	일							
	전소속 부대명												
	접 수 연월일		년	월	일								
	신장		체중		취미								
	종교		민기 시작한 해		년도	특기							
흡 연	일	갑	음	주	월	주	회						
결혼관계		결 혼 연월일		년	월	일	취침시간 기상시간						
총 잠수(비행) 시간		시 간											
거 주 사 향													
현 주 소													
민간 최종 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가 족 사 향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건강 상태	동거 여부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건강 상태	동거 여부
학 력						경 력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검 및 교육					
최종 정밀신체검사 일자	년 월 일	신검 부대명			
최종 잠수(비행)교육 일자	년 월 일	교육장소			
	년 월 일	교육장소			
사 고 경 력 (중사고 포함)					
일자	잠수깊이(비행거리)	잠수(비행)시간	당시임무	사고내용	비 고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잠수(비행) 정지사항					
잠수(비행)정지시간	정지구분	진 단 명	정지 기간	부과 의무부대명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입 원 기 록					
입 원 기 간	진단명	의무부대명	입 원 기 간	진단명	의무부대명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그 밖의 사항(자신이 느끼는 특수 질환 및 고민 등 포함)					

[별지 제2호서식] 수중근무 정지 부과(해제) 요청서

수중근무 정지 부과(해제) 요청서

수중근무 정지 부과(해제) 심의 의뢰서										의뢰일자 :			
수신자 :								발신자 :					
인 적 사 항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연령		만		세	
수중근무 정지 부과(해제) 사유													
수중근무 정지 부과(해제) 구분										과거정지유무			
잠수 휴		단기		장기		무기		해제		유		무	
잠수군의관		소속:		계급 :		성명 :		(인)					
부 대 장		소속:		계급 :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자문의뢰서

자 문 의 료 서

자 문 의 료 서									
수신자									
환자의 인적사항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연령	
자문의뢰 이유									
진단명				군의원	계급	성명	인		
위과 같이 적성자문을 의뢰함.									
년 월 일									
발신자									
계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항공군의관 의견서

항공군의관 의견서

1. 환자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2. 비행경력 현 특기 부호, 기종별 비행 시간, 비행사고 의 유무 및 그 개요	
3. 진단 명	
4. 과거병력, 현병력, 각종 검사소견 및 진찰소견, 군의관의 종합적 의견(공백이 부족하면 별지에 기입 첨부할 것)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항공군의관 계급 군번 성명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인 </div>	

수중근무자 특수 신체검사표

1. 개인신상기록

년 월 일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생년월일	혈 액 형
이수교육과정명		수중근무자격 취득연도		검사 목적	

2. 체격 및 체력계측

신장(Cm)		체중(Kg)		흉위(Cm)		배근력(Kg)		약력(Kg)			
피후검사 (mm)	허리	복부	팔	얼굴	목	가슴	옆구리	무릎	등	종아리	평균치

3. 시력 및 혈압

시 력	혈압(mmHg)	안저검사*(. . .)	ECG*(. . .)
좌 우	/		

4. 청력검사

청력손실 (dB)	Hz	4,000	250*	500*	1,000	2,000	4,000	8,000	소견(. . .)
	좌								
	우								

5. 폐기능 검사

폐활량(ml/%)			분시초기량(ml/%)			최대환기량(ml/%)		체표면적 (㎡)
예측치	실측치	최대치	1초	2초	3초	예측치	실측치	

6. 방사선 검사

흉 부 검 사	간찰소견			직촬번호(. . .)			직촬소견		
골관절검사	고관절부위			이상관절부위			소 견		
	좌				좌				
	우				우				
M.R.I검사	고관절부위			그 밖의 이환부위			소 견		
	좌				좌				
	우				우				

7. 잠수 적성검사

이 경 검 사	압력내성검사(50psig)	산소내성검사(27psig, 30분)

8. 혈액학적 검사

적혈구($\times 10^3/\text{m}\ell$)	백혈구(/ $\text{m}\ell$)			Hb(g/dℓ)			Hct(%)	
백혈구 감별계산* (. . .)	Mg.	M.Mg.	Band N.	Seg. N.	Eos.	Baso.	Lympho.	Mono.

9. 간염 및 STS 검사

HBs-Ag	HBs-Ab	VDRL	TPHA*(. . .)

10. 뇨검사

뇨 당	뇨 단백	RBC	WBC	Cast	기 타

11. 임상소견

과 별	소 견	확 인
내 과		
외 과		
피부과·비뇨기과		
이비인후과·안과		
치 과		

12. 판정

1차 판정	2차 판정
근무제한내용	판 정 사 유
잠수 휴(7일 이내)	
단기정지(3개월 이내)	
장기정지(6개월 이내)	
무기정지(6개월 이상)	
영 구 정 지	

년 월 일

종합판정관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수중(공중)근무자 신체 명세기록부

수중(공중)근무자 신체 명세기록부

1. 군번	2. 직호	3. 계급(연필)	4. 성명		7. 사 진 (4.5×6cm)
			한 글		
			한 자		
5. 소속		6. 생년월일			
8. 현주소 (연필)					
9. 신장	10. 체중	11. 흉위	12. 혈액형		
13. 모발	14. 지문채취	15. 치아 X - RAY	16. 그 밖의 X - RAY		
직모, 곡모	유 , 무	유 , 무			
17. 문식, 흉터, 반점, 그 밖의 피부소견(20란에 표시할 것)					
18. 골절, 골기형, 그 밖의 골소견					

<p>19.</p> <p style="text-align: center;">우 좌</p>	<p style="text-align: center;">우 좌</p>
---	--

20. 비고

작 군 의 성 관	소 속		직 책		일 자	
	계 급		군 번		성 명	

21. 지문채취란						
좌 수					우 수	
	10				5	
	소				소	
	지				지	
	9				4	
	환				환	
	지				지	
	8				3	
	중				중	
	지				지	
	7				2	
	시				시	
	지				지	
	6				1	
	무				무	
	지				지	
22. 지문채취란	소속		직책		일자	
	계급		군번		성명	

23. 비고

24. 치과 방사선 필름을 이곳에 부착할 것

[별지 제8호서식] 공중근무자 특수 신체검사표

공중근무자 특수 신체검사표

〈앞면〉

1.계급	2.군번	3.성명	4.군복무기간 년 개월	5.군별															
6.소속		7.검사목적 또는 구별		8.검사일자															
9.주소																			
10.생년월일		11.공중근무 등급																	
12.공중근무별		13.총비행시간: 14.최근 5개월간 비행시간:																	
		15.신검 의무부대 또는 병원																	
임 상 소 견		이 난에는 각항 이상소견을 번호를 붙여 기입한다																	
임상	아래 각항에 해당됨을 좌·우측란 V로 표시	이상																	
	16. 머리, 얼굴, 목																		
	17. 코																		
	18. 부비동																		
	19. 구강, 인후																		
	20. 귀(일반)(청력관계 제외)																		
	21. 고막(천공여부 등)																		
	22. 눈(일반)(시력관계 제외)																		
	23. 동공(형태, 반사)																		
	24. 눈알운동																		
	25. 폐 및 흉부(유방도 포함)																		
	26. 심장(심전박동, 대동, 심음)																		
	27. 혈관계(정맥류 등)																		
	28. 복부내장("헤르니아"도 포함)																		
	29. 항문, 직장(치핵, 치루, 전립선)																		
	30. 내분비계																		
	31. 생식 비뇨기계																		
	32. 상지(운동기능)																		
	33. 족부(발, 발목)																		
	34. 하지(운동기능)																		
	35. 척추, 그 밖의 근골계																		
	36. 신체특징 반흔(癍痕), 문신(文身)																		
	37. 피부, 임파선																		
	38. 신경계																		
	39. 정신상태																		
	40. 여자골반검사 : 내진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41. 치과 : 아래 기호를 해당하는 치아번호에 표기할 것.				치과소견															
○ ... 보존 가능한 치아 ×... 결손치 ○ - ○ ... 계속 가공 의치																			
/ ... 보존 불가능한 치아 II... 금관(단관) ... 국소 의치																			
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좌	Type Class	
	32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검 사 실 소 견																			
42. 소변						43. 흉부 X-선(촬영일자, 사진번호, 소견)													
단백		당		현미경 소견															
44. 심전도																45. 혈액형			

측 정 및 기 타 소 견							
46.신장(cm)		47.체중(kg)			48.혈압(mmHg)		
49.맥박(회/분)		50.체온(℃)			51.안압		
52.시력		우 교정			좌 교정		
53.청력				54.청력계(장비형과 번호 :)			
		SO(Hz)		500	1000	2000	3000
우 WV /15 SV /15		우					
좌 WV /15 SV /15		좌					
55. 추가 병력사항							
공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기입할 것)							
56. 총괄(결손이나 진단명을 해당되는 항의 번호를 붙여 기입)							
57. 권고(전문적 추가검사, 비행입부정지 여부, 조건부 합격 상신 등 기입)							
58. 불합격 사유(해당하는 항의 번호를 붙여서)							
59. 판정				<input type="checkbox"/> 합격		<input type="checkbox"/> 불합격	
60. 군의관 계급 성명		서명(날인)					
61. 군의관 계급 성명		서명(날인)					
62. 군의관 계급 성명		서명(날인)					
63. 군의관 계급 성명		서명(날인)					
64. 군의관 계급 성명		서명(날인)					
65. 군의관 계급 성명		서명(날인)					
66. 군의관 계급 성명		서명(날인)					
67. 군의관 계급 성명		서명(날인)					
68. 군의관 계급 성명		서명(날인)					

[별지 제9호서식] 청력검사표

청 력 검 사 표

1. 검사부대 :

2. 검 사 일 :

3. 개인신상기록

소 속	직 계	군 번	성 명	생년월일	임대일자	임용일자
합 정 근 무 경 력						
함	개월	부대		개월	총	
함	개월 등	부대		개월 등	개월	
소계 총	개월	소계 총		개월		
과 거 력	지난번 검사		정밀검사 경력		당시 근무처(구체적으로)	
	유(년도)	무	유(년도)	무		

4. 1차 청력검사(4,000Hz)

청력손실 (dB)	좌	우

5. 정밀검사(1차 청력검사 유소견인 경우)

청력손실 (dB)	500Hz	1,000Hz	2,000Hz	4,000Hz	평균치*
	좌				
	우				

* 500, 1,000, 2,000Hz에서 측정된 dB를 3으로 나눈 값

dB	500	750	1000	1500	2000	3000	40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측 정 자	계급		성명		-		
관 정 자	계급		성명		-		
조치사항							
비 고							

CHECK COLOR	RED	BLUE
TEST	우	좌
AIR	○ ○	×-×
AIR MASKED	△ △	□ □
NO RESPONSE	↙	↘
BONE	<	>
BONE MASKED	[]
HEARING EVALUATION		
AVG P/T		
ST		
LDL		
MCL		
WD % CORRECT		

[별지 제10호서식] 잠수기록

잠 수 기 록

제 호 년 월 일

1. 잠수 조건 체크

해저 상태	모래 / 뿔 / 해초 / 자갈 / 기타	수 온	표면 (도)	해저 (도)
해류 유무	무 / 유 (약 / 중 / 강)	시 야	20m 이상 / 5~20m / 5m 이하	
해상 상태	파고 (양호 / 보통 / 불량)	기타 특이 사항		

2. 잠수 장비 체크

가. 스쿠바, 반폐쇄식 및 폐쇄식 잠수, 표면 공급

초기 탱크 압력	(psi/bar)	최종 탱크 압력	(psi/bar)
착용 웨이트	(kg)	기체 조성(N ₂ : O ₂)	(%: %)
착용 보호 장비	마스크 / 슈트 (wet/dry) / 핀 / 장갑 / 부츠 / 기타 ()		

나. 재압실 및 포화 잠수

기체 조성(N ₂ : O ₂ : H _e)	(%: %: %)	이산화 탄소 농도	% 산소 분압(pO ₂)
실내 습도	% 실내 온도	도	

3. 잠수 보고

가. 일반적인 잠수

	잠수 시간				잠수 깊이
1 회	입수 (:)	퇴수 (:)	상승 (분)	휴식 (분)	m/ft
2 회	입수 (:)	퇴수 (:)	상승 (분)	휴식 (분)	m/ft
3 회	입수 (:)	퇴수 (:)	상승 (분)	총잠수 (분)	m/ft
활동 내용					

나. 포화잠수 및 재압실 잠수

포화 수심	m	가압 시간	시작 (일 시 분)
최대 잠수 깊이	m	도착 (일 시 분)	
총 잠수 시간	일 시간	감압 시간	시작 (일 시 분)
가압 속도 (ft/hr)	감압 속도 (ft/hr)	도착 (일 시 분)	

4. 잠수병 발생 및 치료시

발생 시기	훈련중 / 훈련후 (시 분)	발생장소	
증 상			
치료까지 지연 시간	시 분	치료 테이블	Table () 연장 ()
챔버내 체류 시간	시 분	텐 더	

위 와 같 이 확 인 함

부대(서)장 : 계급 : 성명 : 서명 :